

관세연구 17-03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2017. 6.

연구진

연구책임자

강성훈 부연구위원

공동연구원

양지영 연구원

김미정 연구원

목차

I. 서론	9
1. 연구 목적 및 배경	9
2. 연구 내용	10
II.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제도	12
1.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	12
가. 개요	12
나. 관련 법	21
다. 입주 혜택 및 자격	21
라. 규제 및 사후관리	25
2. 주요 문제점	31
가. 관리체계	31
나. 관계법령	31
다. 사후관리	32
III.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34
1.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34
가. 개요	34
나. 관련 법	43

다. 입주자격 및 혜택	43
라. 규제 및 사후관리	45
2.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제도	49
가. 개요	49
나. 관련 법	53
다. 입주 혜택 및 자격	54
라. 규제 및 사후관리	56
3. 중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60
가. 개요	60
나. 관련 법	65
다. 입주 혜택 및 자격	65
라. 규제 및 사후관리	69
4.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제도	71
가. 개요	71
나. 관련 법	74
다. 입주자격 및 혜택	75
라. 규제 및 사후관리	77
IV. 국제비교	79
1. 목적	79
2. 관계 법령	80
3. 관리체계	80
4. 지원혜택	82
5. 사후관리	83

V. 결론.....	86
참고문헌.....	89
부록.....	92

표 목차

〈표 II-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	15
〈표 II-2〉 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15
〈표 II-3〉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지정기준	18
〈표 II-4〉 주요 경제특구제도 및 혜택 비교	20
〈표 II-5〉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혜택	22
〈표 II-6〉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24
〈표 II-7〉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규제 및 사후관리	25
〈표 II-8〉 자유무역지역 규제의 재검토 사항 및 기간	30
〈표 III-1〉 미국 자유무역지역 활동 순위	36
〈표 III-2〉 미국자유무역지역 경제활동	37
〈표 III-3〉 일반구역과 준구역의 비교	38
〈표 III-4〉 일반구역, 준구역 운영체계	39
〈표 III-5〉 주요 해외반입물품	40
〈표 III-6〉 관리감독 역할 구분	41
〈표 III-7〉 대만 수출가공구 지정 현황 및 주요 산업	52
〈표 III-8〉 대만 수출가공구 운영기관 및 담당 업무	53
〈표 III-9〉 상하이자유무역구 구성 및 특징	63
〈표 III-10〉 중국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 추이	68
〈표 III-11〉 중국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금지 및 제한 분야	68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비교	85

그림 목차

[그림 II-1]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연혁.....	13
[그림 II-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16
[그림 III-1]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35
[그림 III-2]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관련 주체 간 연관도.....	42
[그림 III-3] 대만 수출가공구의 주요 산업 전환 과정.....	50
[그림 III-4]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지정 현황.....	64

I. 서론

1. 연구 목적 및 배경

-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은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 등의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관세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제공하는 법적·지리적 특정 지역을 의미함¹⁾
 - 개정교토협약에서는 자유지역(Free Zone)²⁾에 해당함³⁾

- 자유무역지역에 관세유보, 조세감면, 임대료 감면, 각종 인프라, 행정지원서비스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하는 이유는 각종 규제완화를 통해 무역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촉진하는 데 있음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경제개발 초기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통해 고도성장을 달성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자본 축적과 선진기술을 도입하는 역할을 함
 - 1970년 대만의 수출가공구를 벤치마킹한 마산자유무역지역의 도입을 시작으로 2000년대 이후 자유무역지역의 조성을 확대해온 결과, 2017년 6월 현재 13개 지역⁴⁾에서 운영 중임

1)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p.9

2) 자유지역은 자국 영토의 일부이지만 이 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관세 및 제세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관세영역 밖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지역을 말함

3) 개정교토협약 특별부속서D 제2장 정의 E1/F1

4)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춘, 울산, 김제 등 산업단지형 7개, 부산항, 광양항, 인천항, 포항항, 평택·당진항, 인천국제공항 등 항만·공항형 6개

- 그러나 최근 들어 국내외 경제 환경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의 역할이 정책적 목표에 부합하지 못하면서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존재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전국 13개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성과는 부진함
 - 초기 자유무역지역의 입지는 지역 안배적 차원에서 결정되었으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조성된 유사제도가 다수 존재함

- 반면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자유무역지역을 도입하고 있는 주변 경쟁국이나 미국과 같은 선진국은 자유무역지역 조성 이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확대되고 있음

- 현재까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연구는 마산자유무역지역과 같은 지역별 연구나 경제자유구역과 같은 유사제도와의 비교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우리나라와 경쟁 관계에 있는 주변국들과의 국제비교 연구는 부족하였음

- 따라서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변 경쟁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를 비교·분석하여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 및 기본 정보를 제공할 것임

2. 연구 내용

- 본 연구는 우리나라와 주변 경쟁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와 운영현황을 조사함
 - 자유무역지역의 설립목적 및 배경, 지정 및 운영현황 등의 개요, 관련 법, 입주혜택 및 입주자격, 규제 및 사후관리 등의 내용 등을 중심으로 함
 - 다만, 법규정 등 제도적인 부분에 한해 조사가 이루어진바, 실질적인 운영상의 문제점이나 실무적인 사례를 다루지 못한 한계점이 있음

- 조사 대상국으로는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과 경쟁관계에 있는 대만, 중국, 싱가포르 및 70년 전부터 자유무역지역을 운영 중인 미국을 선정하여 살펴봄

- 본 보고서는 제 I 장 서론을 포함한 5개의 장으로 구성됨
 - 제Ⅱ장에서는 우리나라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 및 주요 문제점을 정리함
 - 제Ⅲ장에서는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등 4개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요, 관련 법, 입주혜택 및 자격, 규제 및 사후관리를 정리함
 - 제Ⅳ장에서는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국제비교를 하였으며 제Ⅴ장에서는 보고서의 결과를 요약함

II.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제도

1. 현행 자유무역지역제도

가. 개요

1) 설립목적 및 연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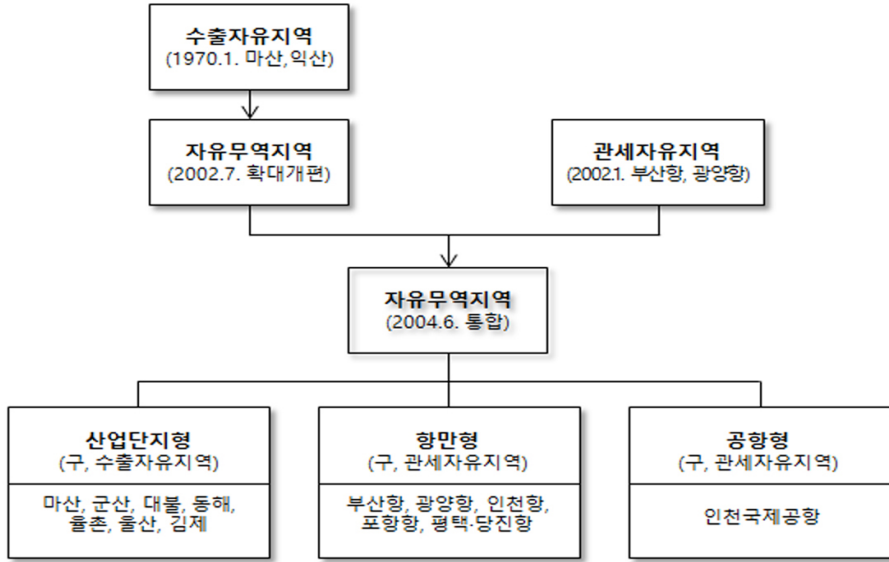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역은 「관세법」, 「대외무역법」 등에 대한 특례와 지원을 통하여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기 위한 지역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지역⁵⁾을 말함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조성 목적은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해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 원활화, 국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⁶⁾

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6)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5.do?brf_code_v=5#header

[그림 II-1]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연혁



자료: 저자 작성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기존의 수출자유지역과 관세자유지역을 통합하면서 제도적인 틀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음
- 산업단지형 자유무역지역은 1970년 1월 제정된 「수출자유지역설치법」에 근거하며, 마산과 익산에 수출자유지역을 지정
 - 2000년 7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
- 물류형 자유무역지역은 2000년 12월 제정된 「국제물류기지육성을 위한 관세자유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2002년 1월 부산항과 광양항을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
- 2004년 3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전문 개정되면서 자유무역지역과 관세자유지역⁷⁾을 자유무역지역으로 통합

7) 관세자유지역(Free Tax Zone)은 주요 공항과 항만을 관세 배제지역으로 지정하여 환적되는 통과 외국화물에 대해 세관통제를 배제함으로써 물류활동을 활성화

2) 지정 및 운영현황

- 자유무역지역은 지정유형에 따라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2017년 6월 기준 전국 13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 산업단지형은 마산, 군산, 대불, 동해, 울촌, 울산, 김제 등 7개 지역
 - 공항·항만형은 인천국제공항, 부산항(용당, 감천, 부산·진해, 남항), 인천항, 광양항, 포항, 평택·당진 등 6개 지역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관리권자는 다음과 같음⁸⁾
 - 산업단지형의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7개 각 지역의 자유무역지역관리원에서 관리
 - 공항 및 배후지,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의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 서울지방항공청과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관리
 - 항만 및 배후지의 경우 해양수산부장관
 - 지방해양항만청과 부산항만공사(부산항), 인천항(인천항만공사), 여수광양항만공사(광양항), 경기평택항만공사(평택·당진항) 등 4개 각 지역의 항만공사에서 관리

- 2014년 6월 기준 업체 수(외투)와 입주율이 가장 높은 곳은 마산과 부산항으로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임
 - 그러나 산업단지형과 공항·항만형 모두 각 지역 관리기관이 서로 상이하다 보니 최신 현황 정보의 구축이 미흡하다고 볼 수 있음

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표 II-1〉 자유무역지역 지정 현황¹⁾

구분	지정지역	지정일	면적(천㎡)	업체수(외투)	입주율(%)
산업단지형	마산	1970. 1. 1	957	102(58)	100
	군산	2000.10. 6	1,256	30(12)	85.3
	대불	2002.11.21	1,157	33(23)	95.9
	동해	2005.12.12	248	13(8)	26.5
	울촌	2005.12.12	344	9(8)	42.9
	울산	2008.12. 8	837	27(6)	97.3
	김제	2009. 1. 6	991	3(2)	5.4
공항·항만형	부산항	2002. 1. 1	9,363	58(56)	100
	광양항	2002. 1. 1	8,880	34(23)	68
	인천항	2003. 1. 1	2,014	-	-
	포항항	2008.12. 8	724	-	-
	평택·당진항	2009. 3.30	1,429	13(11)	84
	인천국제공항	2005. 4. 6. (1단계) 2007.12.31. (2단계)	3,015	21(6)	84(1단계) 27(2단계)

주: 1) 2014년 6월말 기준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motie/py/brf/motiebriefing/motiebriefing5.do?brf_code_v=5#header, (검색일자: 2017. 7. 24)

- 한편, 자유무역지역을 통한 수출실적은 2011년 50억 8,900만달러를 기록한 이후 2015년 30억 4,300만달러로 감소하는 추세임
- 이는 2015년 보세공장 수출액(1,519억달러)의 약 2% 수준에 불과함

〈표 II-2〉 자유무역지역 수출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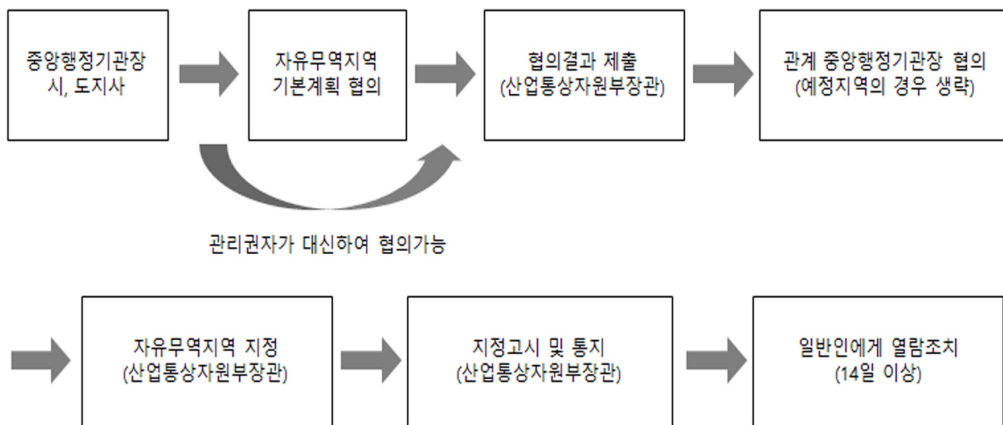
(단위: 백만달러)

구분	2009년	2011년	2013년	2015년
산업단지형	3,538	2,857	780	387
공항만형	1,362	2,232	2,978	2,656
소계	4,901	5,089	3,759	3,043

자료: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내부자료)

3) 지정절차 및 지정요건

[그림 II-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절차



자료: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p.5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절차는 다음과 같음⁹⁾

-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도지사¹⁰⁾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음
 - 한편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 관리권자에게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계 시·도지사와 협의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함
-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면 자유무역지역 기본계획을 작성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지정이 요청된 지역의 실정과 지정의 필요성 및 지정 요건을 검토한 후 기획재정부장관,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10)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함

- 다만, 자유무역지역 예정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생략 가능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지역의 위치, 경계, 면적 등을 고시하고, 그 내용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통지해야 함
- 통지를 받은 시·도지사는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함

□ 자유무역지역은 지정 요건은 다음과 같음

- 지정대상 지역은 산업단지¹¹⁾, 공항 및 배후지¹²⁾,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¹³⁾, 항만 및 배후지¹⁴⁾ 중에서 화물 처리 능력 등이 정해진 기준¹⁵⁾에 적합할 것
- 도로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거나 확보될 수 있을 것
- 물품의 반입·반출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통제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설치계획이 확정되어 있을 것

1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12) 「공항시설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항 및 배후지(背後地)

13)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및 제6호에 따른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14) 「항만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항만 및 배후지

15)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표 II-3〉 자유무역지역의 유형별 지정기준

유형	지정기준
산업단지	- 공항 또는 항만에 인접하여 화물의 국외 반출·반입이 쉬운 지역
공항	- 연간 30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물류터미널 등 항공화물의 보관·전시·분류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지역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은 30만㎡ 이상일 것 - 배후지는 해당 공항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공항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항만	-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항로가 개설되어 있을 것 -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 선박용 전용부두가 있을 것 -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은 50만㎡ 이상일 것 -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물류단지 및 물류터미널	-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 반입물량의 50% 이상이 외국으로부터 반입되고, 외국으로부터 반입된 물량의 20% 이상이 국외로 반출되거나 반출될 것으로 예상될 것 - 물류단지 또는 물류터미널의 면적이 50만㎡ 이상일 것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4) 다른 경제특구와의 관계

- 자유무역지역과 같이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균형개발 등을 목적으로 조성된 유사제도에는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등의 경제특구가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등을 목적으로 함
 - 경제자유구역은 외국인투자 촉진을 위해 규제완화와 외국인 생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함
 - 외국인투자지역(산업단지형)은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을 위해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형 부지를 저가에 공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 국내 경제특구는 특구별 차별화와 특성화된 발전전략이 미흡하고, 입주자격, 조세감면,

입지지원 및 규제특례가 유사하여 특구 상호간에 상호보완관계보다 대체관계적 성격이 강함¹⁶⁾

- 예컨대, 자유무역지역과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은 법적 근거는 다르나, 외국인투자 유치라는 지정목적을 위해 조세감면, 입지지원, 규제특례 등의 주요 혜택이 비슷하여 외국인 투자기업 입장에서는 각 경제특구 간의 차별성보다는 제도가 복잡한 것으로 인식함¹⁷⁾

□ 그러나 본 연구에서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라는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자유로운 제조·물류·유통 및 무역활동을 보장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지는바, 다른 경제특구에 비해 비교우위를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음

- 경제자유구역과 외국인 투자지역의 관세 혜택은 5년간 100% 면제라는 기간의 제한이 있음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과 다른 경제특구와의 역할 분담이나 연계 방안을 모색하여 상호보완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함

- 실제로 3개의 유사한 제도로 인해 혼란을 겪는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해서는 다른 제도로 연계하여 안내해 주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려짐
- 이처럼 국내에 투자를 원하는 외국인 투자기업이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에 문의 시 조건이나 혜택 부분에서 자유무역지역에 적합할 경우에는 자유무역지역으로 연계하는 방법도 있음

16)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관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12, p.44

17) 한국경제, <http://hei.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6012674721>, (검색일자: 2017. 7. 24)

〈표 II-4〉 주요 경제특구 제도 및 혜택 비교

구 분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구역	외국인투자지역 (산업단지형)
근거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외국인투자촉진법
목적	외국인투자 유치, 무역진흥, 지역개발	외국인투자 촉진, 균형발전 도모	외국인투자 유치 촉진
입주자격	국내·외투기업 • 제조업: 수출액 - 50% 이상(대기업) - 40% 이상(중견기업) - 30% 이상(중소기업) • 물류업, 사업지원 업종	국내·외투 기업	• 외투비율 30% 이상 • FDI 5천만원 이상 • 고도기술수반사업, 첨단 제조업, 물류업 중 하나
조세 감면	지원대상	외국인투자기업	
	관세	면제	5년간 100% 면제
	내국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 지방세 최장 15년까지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1천만달러 이상 • 물류업: 5백만달러 이상 • 법인세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 • 지방세 최장 15년까지 감면
입지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 일괄 매입 • 국유지 저가임대: 부지가액의 1% 수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유지: 임대 및 임대료 감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가·지자체 일괄 매입 (수도권:40:60, 지방:70:25)
규제특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배제 • 교통유발부담금 면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교육·의료기관 설립 • 분양가 상한제 배제 등 • 노동규제 완화 • 1만달러 이하 외국환거래 무신고 • 외국인전용카지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고용 배제

자료: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관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12, p.45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나. 관련 법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법적 근거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기본으로 함
 -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두고 있음
 - 기타 행정규칙으로는 관세청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관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을 고시함
 -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에 관한 지침」, 「2017년 자유무역지역 공동부담금 징수요율과 징수요령」 등을 두고 있음

- 타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관세법」 등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함¹⁸⁾

다. 입주 혜택 및 자격

1)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혜택

- 자유무역지역제도의 가장 큰 특징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을 관세영역으로 보지 않고 비관세영역 내지는 외국지역으로 간주한다는 점임¹⁹⁾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다음과 같이 관세유보, 조세감면에서부터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음
 - 과세보류
 -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관세등의 면제 및 환급

1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조

19) 이성우·송주미·한덕훈,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12, p.11

-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예정지역에서 관세 등의 면제
-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임대료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표 II-5〉 자유무역지역의 주요 혜택

구분		내용
세제지원	과세보류	-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농어촌특별세, 교육세, 부가가치세 등의 과세보류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관세 등의 면제 및 환급	-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의 경우 관세,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등을 면제 또는 환급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반입신고를 한 내국물품 또는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입주업체 간의 공급, 제공하는 외국물품 등과 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영세율을 적용
	예정지역에서 관세 등의 면제	- 예정지역에서 입주기업체가 건물 및 공장을 건축하기 위하여 외국에서 반입하는 시설재의 경우 관세 등을 면제
	외국인투자기업의 조세감면	- 외국인투자기업인 입주기업체의 경우 법인세, 소득세,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등의 조세감면
	교통유발부담금의 면제	- 입주기업체의 공장 등의 경우 교통유발부담금을 면제
임대료	외국인투자기업의 임대료	- 1,000만달러 이상 투자기업의 경우 10년간 임대료 면제
		- 500만달러 이상 신규투자 제조업의 경우 임대료 75% 수준
	국내 입주기업체의 임대료	- 고도기술수반 외국인투자기업은 감면 외 추가임대료를 감면(제20조 제2항)
	국내 입주기업체의 임대료	- 시중임대료에 비해 저렴한 임대료

구분	내용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 입주기업체의 기술개발 활동 및 인력양성을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 - 입주기업체에 임대하는 공장 등의 각종 기반 시설의 확충에 필요한 자금
행정서비스의 제공	- 자유무역지역을 관리·운영하고 수출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설치·운영함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2항 및 제44조~제50조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 자유무역지역은 기본적으로 관세유보, 조세감면에서부터 임대료 감면, 보조금 지원 등의 다양한 혜택이 있으므로 입주업종과 수출비중 등을 통해 입주자격을 제한하고 있음²⁰⁾
 - 우리나라의 경우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할 수 있는 자격은 positive list 방식을 채택하고 있어 허용업종에 포함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하며, negative list에 비해 입주자격에 대한 규제가 높은 편임

- 자유무역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관리권자는 입주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²¹⁾
 - 다만, 공공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한하여야 하며, 부당한 의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자유무역지역의 입주자격은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으며, 각 입주 업종별 자격요건을 충족해야 함²²⁾

20) 이성우 외 2인(2014), p.22

2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2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

-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수출 주목적 지식서비스산업
- 수출입거래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기업지원업
-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
- 우선입주 업종

〈표 II-6〉 자유무역지역의 입주 자격

구분	자격 요건
수출 주목적 제조업	- 입주허가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대기업 매출액의 100/50 (중견기업 매출액의 100/40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의 100/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제조업 또는 지식서비스산업을 영위하는 외국인투자기업	- 외국인 투자금액이 1억원 이상으로서 외국인 투자비율이 10/100 이상인 기업
수출 주목적 지식서비스산업	- 입주허가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액이 100/5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수출입 거래를 주목적으로 하는 도매업	- 입주허가신청일로부터 과거 3년의 기간 중 총매출액 대비 수출입거래 비중이 대기업 매출액의 100/50(중견기업 매출액의 100/40 이상, 중소기업 매출액의 100/30) 이상인 기간이 연속하여 1년 이상인 기업
입주기업체 지원업	- 금융, 보험, 통관, 세무, 회계 등 입주기업체의 사업을 지원하는 업종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업종
기타	- 대통령이 정하는 공공기관으로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항만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우선입주 업종	- 외국인투자기업 -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고도기술 수반사업 - 수출 주목적 업체의 경우 수출금액이 많은 순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및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토대로 저자 작성

라. 규제 및 사후관리

- 자유무역지역의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입주기업을 관리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와 사후관리를 두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규제 및 사후관리는 ① 입주계약의 취소 ②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 제한 ③ 경매 등에 의해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취득 ④ 통제시설의 설치 ⑤ 반출입 물품 제한 ⑥ 합동조사 ⑦ 규제의 재검토 7가지로 구분하여 살펴봄

〈표 II-7〉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규제 및 사후관리

구분	내용
입주계약의 취소	- 자유무역지역 입주(입주자격 조건 확보) →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소유 → 입주계약의 취소(입주자격 상실) →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 등을 다른 입주기업체 또는 입주자격을 가진 제3자에게 양도 → 양도되지 않을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 신고 전에 공장 등을 처분 시 관리권자에게 양도(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입주자격을 가진 제3자에게 양도)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취득한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등이나 입주자격을 가진 제3자로 한정
경매 등에 의해 토지 또는 공장의 취득	- 경매 등에 의해 자유무역지역 내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 → 입주계약을 받거나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자격을 가진 제3자에게 양도(양도되지 않을 경우 관리권자에게 양도)
통제시설의 설치	- 관리권자는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 설치 및 운영시기 공고,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 -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 관리
반출입 물품 제한	- 자유무역지역 입주(입주자격 조건 확보) → 입주계약의 취소(입주자격 상실) → 자유무역지역 내 미처분 외국물품등 잔존 →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
합동조사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조사반을 편성 →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원산지 관리실태 등에 관한 점검 또는 확인
규제의 재검토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각종 규제에 대하여 2년 또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함

자료: 저자 작성

1) 입주계약의 취소

□ 자유무역지역은 입주계약의 취소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규제를 두고 있음

○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²³⁾

- 피성년후견인
- 「FTZ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한 경우
- 「FTZ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FTZ법」 또는 「관세법」을 위반하여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세 또는 내국세를 체납한 자
- 입주계약이 해지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입주계약을 해지하는 경우²⁴⁾

-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업체가 부정한 방법으로 입주계약을 체결한 경우 또는 입주 자격 요건을 상실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해야 함
- 입주계약을 체결한 사업 외의 사업을 한 경우, 이를 위반하여 사업개시의 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신고를 하고 사업을 시작한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할 때 부여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입주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 폐업한 경우

○ 상기의 사유로 입주계약이 해지된 경우 다음에 따라야 함

- 수출입 계약에 대한 이행업무 및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잔무 처리업무²⁵⁾

2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2조

24)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5조

- 를 제외하고는 사업을 즉시 중지해야 함
- 외국물품, 자유무역지역 안으로 반입신고를 한 물품 등의 종류 및 수량을 고려하여 6개월 범위에서 세관장이 정하는 기간 이내에 잔여 자유무역지역 밖으로 반출하거나 다른 입주기업체에 양도해야 함
- 또한 해당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처분해야 함

2)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²⁶⁾

□ 자유무역지역의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은 다음과 같음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전에 공장 등을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관리권자에게 양도해야 함
- 상기 관리권자가 양수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리권자가 선정한 다른 입주기업체 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게 할 수 있음
-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 후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취득한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양도 또는 전대하는 경우 그 계약의 당사자는 입주기업체 등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로 한정함
- 한편, 공장 등의 양도 임대 또는 사용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3) 경매 등에 의한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사용²⁷⁾

□ 경매 등에 의해 자유무역지역 내에 토지 또는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다음에 따라 이를 처분 또는 사용해야 함

- 관리권자와 입주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다만, 입주기업체를 인수 또는 합병한 자가

25) 남은 물품의 재고조사 및 처분을 말함

26)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

27)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

입주 자격을 갖추고 당초 계약한 업종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입주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 상기의 입주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에는 다른 입주기업체나 입주 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할 것
- 상기의 양도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리권자에게 양도할 것

4)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의 설치²⁸⁾

□ 자유무역지역의 통제시설의 설치 등과 관련하여 관리권자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관세청장과 협의하여 통제시설을 설치하고 운영시기를 공고해야 함
- 통제시설을 유지·관리해야 함
- 관세청장이 통제시설의 보수 또는 확충을 요구할 경우 관리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을 관리하며, 세관장이 출입기록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함
 - 종전에는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자와 자동차는 규정에 따라 출입증이나 통행증을 소지하고 관리권자는 그 명세를 세관장에 통보하였음

5) 반출입 물품 제한

□ 자유무역지역의 반출입과 관련한 규제는 다음과 같음

- 세관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화주 등에 국외 반출 또는 폐기를 명하거나 화주 등에게 미리 통보한 후 직접 이를 폐기할 수 있음²⁹⁾
 - 사람의 생명이나 재산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경우
 - 부패 또는 변질된 물품

28)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7조

29)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

- 유효기간이 지난 물품
- 상기에 준하여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물품
- 반입정지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와 같음³⁰⁾
 - 수입신고 및 관세 등을 납부하지 않고 외국물품을 사용, 소비하기 위해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 또는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한 경우
 - 국외 반출신고 시 국외 반출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등의 조건을 구비하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구비한 경우
 - 역외작업 물품의 반출신고 및 관세 등의 납부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재고 기록 등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 입주기업체에 대해 재고관리 상황의 조사를 실시하는 때에 정당한 사유 없이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거나 자료제출을 거부한 경우
- 반출입 금지물품은 다음과 같음³¹⁾
 - 「관세법」 제234조의 규정에 의한 수출입금지물품
 - 국민보건 또는 환경보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물품
 - 지식재산권 보호에 따라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

6) 합동조사

-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합동조사는 다음과 같음³²⁾
 -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토교통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과 합동으로 자유무역지역 조사반을 편성하여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및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의 관리실태 등에 관한 사항을 점검 또는 확인하게 할 수 있음
 - 또한 관리권자로 하여금 그 점검 또는 확인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음

30)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0조의2조

31)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1조 내지 제41조의2조

32)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7) 규제의 재검토

- 한편, 자유무역지역의 각종 규제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다음의 각 사항에 대한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 또는 3년마다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³³⁾

〈표 II-8〉 자유무역지역 규제의 재검토 사항 및 기간

구분	기준일	재검토 기간
입주자격	2014년 1월 1일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외국물품 등을 사용한 공장 등의 임대 또는 양도 등의 허가요건		
재고 기록 대상 물품, 멸실·분실·폐기 신고 절차 및 기록 보존 기간		
입주계약의 변경계약 사항 및 절차	2015년 1월 1일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
입주계약해지자의 공장 등의 처분계획서 제출의무 및 처분절차		
공장 등의 건축 시 관리권자의 통보의무		
물품의 국외 반출 시 신고사항		
내국물품의 반출확인 생략물품 등		
외국물품 등의 일시 반출·반입		
역외작업의 신고사항, 역외작업의 범위 및 반출기간 등		
물품 폐기 공고 등		
자유무역지역법상 별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자료: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33)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

2. 주요 문제점

가.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 관리권자, 관리기관이 모두 상이하여 각기 다른 추진체계를 통해 관리·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운영과 활성화에 한계점이 있음
 - 따라서 각종 성과분석 등에 사용될 수 있는 지표인 외국인투자, 수출입규모, 입주기업, 입주율, 각종 지원 내용 등의 최근 현황정보의 구축도 미흡한 실정임
 - 이는 전국 13개 자유무역지역을 총괄하는 통일된 지침의 부재에 따라 나타나는 실질적임 문제점이라고 보여짐

- 초기 자유무역지역은 지정 당시 경제적 고려보다는 지역 균형개발 등의 정치적 고려에 따라 지정되었기 때문에 현재 운영 중인 경제자유구역이나 외국인투자지역과 설정 지역이 중복되거나 인접해 있음³⁴⁾
 - 전국 13개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이 있으나 외국인투자 유치 등의 성과는 부진함
 - 또한 관세유보 외에는 다른 경제특구와의 차별성이 부족함

나. 관계법령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는바,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물품에 대한 통관절차 관련 구체적 세부절차 및 타 법률에 위임 없이 「관세법」을 배제하고 있음³⁵⁾

34) 기획재정부,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2014. 12. 19, pp.7~9

35)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 자유무역지역 반입 이전의 외국물품 관리는 「관세법」을 적용하지만 자유무역지역으로의 물품 반출입 신고 및 입주업체 간 물품이동 등은 「관세법」 적용을 배제함
-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관세법」을 준용하는 형태임
- 따라서 통관절차 관련 통일된 관세행정 법령체계의 구축이 필요함

다. 사후관리

-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의 반입과 반출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담장, 출입문, 경비초소, 검사장 등의 통제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자유무역지역은 개념상 지역 반출입 통제를 엄격하게 집행하여 통관질서를 유지하는 시스템이지만, 현재의 통제시설은 유명무실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³⁶⁾
 - 차량 및 사람이 자유롭게 출입함에 따라 해당 자유무역지역에 미등록 차량의 무단출입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반면, 엄격한 통제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교통체증으로 출입구가 마비됨
 - 지역구조 특성상 배후단지 및 일반산업단지와 맞물려 있어 사실상 외부와 폐쇄하여 운영하기 어려움
 - 출입구 통제시설 관리를 보세화물관리 지식·경험이 부재한 관리권자가 수행함
- 또한 자유무역지역은 조세감면 등 각종 특혜가 제공되는 제도이므로 국가 차원에서 비용 대비 일정한 성과가 있어야 지속성을 가질 수 있음³⁷⁾
 -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에서는 입주계약의 해지, 토지 또는 공장 등의 처분제한 규정에 따라 입주기업이 다른 기업에 임대할 경우 신고를 해야 하며, 입주자격이 없는 업체가 불법으로 입주한 경우 퇴출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36)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37) 장근호(2012), p.10

- 그러나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자유무역지역의 설립을 허가하지만 허가 당시 심의 이외에는 작업 개시에 대한 심사나 운영 평가 혹은 작업 승인 등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³⁸⁾
- 자유무역지역 내 입주업체의 불법임대 또는 입주업체 가운데 중도에 자격을 상실하였으나 임대료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고 있는 것이 적발되는 사례도 있음

38) 장근호(2012), p.126

Ⅲ.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1.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가. 개요

- 미국은 자유무역지역법(Foreign Trade Zones Act)을 1934년에 만들고 뉴욕에 처음으로 자유무역지역을 설립함³⁹⁾
- 설립 초창기에는 중계무역이나 저장창고의 역할로 포장, 라벨링 작업 등으로 이용되었으며, 1950년에 제조 허가법이 추가되면서 자유무역지역의 범위가 넓어짐⁴⁰⁾
 - 저장, 검사, 포장, 유통 등의 물류활동은 모든 자유무역지역에 허용되지만 제조, 가공, 조립과 같은 생산활동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의 승인이 필요함
-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은 대외무역의 촉진, 고용창출, 미국 내 기업 활동 유지, 지역경제 개발 촉진 등을 통한 국내경제 활성화임⁴¹⁾
 - 미국은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할 때 면적기준이나 화물량으로 판단 기준을 정하지 않고 설립되는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기준으로 삼아 설립허가를 하고 있음⁴²⁾
- 자유무역지역은 보안구역으로 미국 세관(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39)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40) 상동

41)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 2015*

42) 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CBP)의 관리 감독을 받고 있음⁴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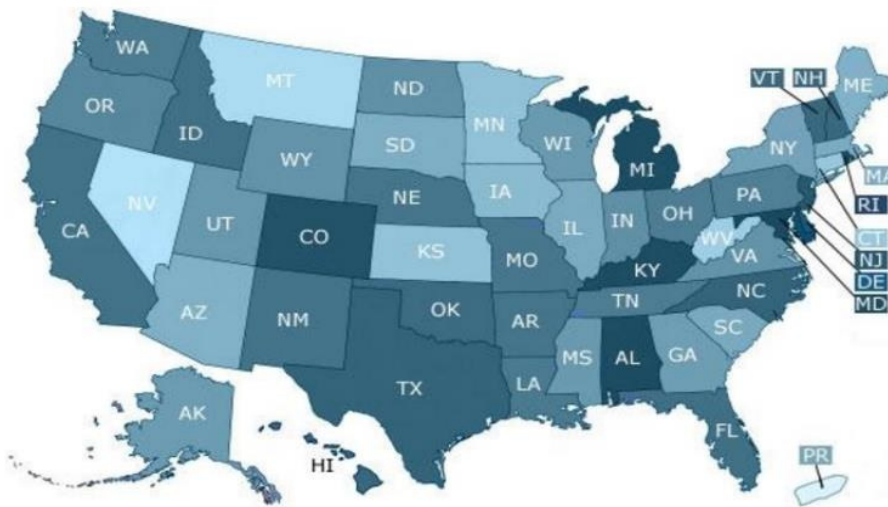
○ 관세영역 밖으로 취급되어 관세가 유예되는 혜택이 있으며 내·외국물품을 자유무역 지역으로 반입할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법은 Title 19 of United State Code의 19 U.S.C. 81a~81u과 15 C.F.R. 400에 규정되어 있음⁴⁴⁾

1) 운영현황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 지정은 [그림 III-1]과 같이 50개 주에 각각 1개 이상으로 지정되어 운영되고 있음

[그림 III-1] 자유무역지역 지정현황



자료: <http://enforcement.trade.gov/> (검색일자: 2017.6.29.)

43)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 2015*

44) 이성우·송주미·한덕훈,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12

- <표 III-1>을 보면, 미국 내 물품반입이 가장 많이 되는 자유무역지역은 텍사스이며 루이지애나, 캘리포니아, 사우스캐롤라이나 순임
- 수출을 가장 많이 하는 자유무역지역은 텍사스, 아리조나, 사우스캐롤라이나, 루이지애나 순임

<표 III-1> 미국 자유무역지역 활동 순위

물품반입 순위	도시	수출 순위	도시
1	Texas	1	Texas
2	Louisiana	2	Arizona
3	California	3	South Carolina
4	South Carolina	4	Louisiana
5	Arizona	5	Alabama
6	Tennessee	6	Florida
7	Pennsylvania	7	Mississippi
8	Kentucky	8	Indiana
9	Illinois	9	California
10	New Jersey	10	Tennessee

자료: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 2015*, Top 25 States for FTZ Activity, p.10

- <표 III-2>를 보면 2015년 기준 자유무역지역에는 2,900개의 회사가 있으며 42만명이 일하고 있음⁴⁵⁾
- 허가 기준 수로는 262개이며 운영 기준으로는 186개가 존재함
- 승인된 준구역은 500개가 존재하고 있음⁴⁶⁾
- 자유무역지역 일반구역에 반입된 화물은 228억달러, 준구역은 431억달러로 총 659억 달러이며 그 중 63%가 내국물품 관련 상품임

45) US Foreign Trade Board Zone, *Annual Report 2015*

46) U.S. Foreign-Trade Zones Board, <http://enforcement.trade.gov/ftzpage/info/zonestats.html>, (검색일자: 2016. 6. 25)

〈표 III-2〉 미국자유무역지역 경제활동

(단위: 억달러, %)

	2011	2012	2013	2014	2015
반입화물	6,409	7,322	8,358	7,981	6,594
일반구역	1,062	1,818	2,645	2,345	2,280
준구역	5,346	5,504	5,713	5,636	4,314
준구역 비중	83%	75%	68%	71%	65%
외국물품 원료	2,770	3,038	2,903	2,883	2,448
일반구역	521	919	1,008	1,124	1,265
준구역	2,249	2,118	1,895	1,759	1,183
내국물품 원료	3,638	4,285	5,455	5,097	4,146
일반구역	541	899	1,637	1,220	1,015
준구역	3,097	3,386	3,818	3,877	3,131
내국물품 원료 비중	57%	58%	65%	64%	63%
일반구역	51%	49%	62%	52%	45%
준구역	58%	61%	67%	69%	73%
수출 ¹⁾	543	699	795	992	846
일반구역	125	167	186	326	252
준구역	418	532	609	666	594
허가기준 수	257	256	257	258	262
운영기준(수)	171	174	177	179	186

주: 1) 부가가치 제외한 원료 기준임

자료: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 2015*, SUMMARY STATISTICS, 2011-2015 p.6

□ 역내 입주 기업들은 외국으로 수출보다는 내국물품을 일부 외국 물품과 가공 후에 다시 국내로 반입하는 형태가 주를 이루고 있음⁴⁷⁾

47) 백종실,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4, pp.64~74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일반구역(General Purpose Zone, 이하 GP zone)과 준구역(subzone)으로 구분됨
- 일반구역은 공항 또는 항만시설이나 산업공단 근처(60마일 또는 자동차로 90분 이내)에 지정하며, 보관, 저장 등의 물류기능과 부분적 조립이 가능함⁴⁸⁾
 - 준구역은 입지의 제한이 없으며 제조단지 주변에 대부분 위치하고 있음
 - 공장 같은 기존 개별 업체의 생산시설이 준구역으로 지정되기도 함
 - 일반구역의 운영자가 관리하게 되며 자동차, 선박, 석유화학 등의 업종이 있음⁴⁹⁾

〈표 III-3〉 일반구역과 준구역의 비교

구분	일반구역	준구역
입지	공항 또는 항만 인접지역	제한 없음 생산시설 자체가 준지역
용도	보관, 저장, 유통 등 물류기능 부분적인 조립, 생산도 가능	제조, 가공
형태	수송수단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부두, 건물 등을 설치	기존 개별업체의 생산시설 (공장 형태)
입주방법	창고시설 임대나 일반적 공단에 임대 형태로 입주	기존공장 입지 지역을 준구역으로 허가

자료: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p.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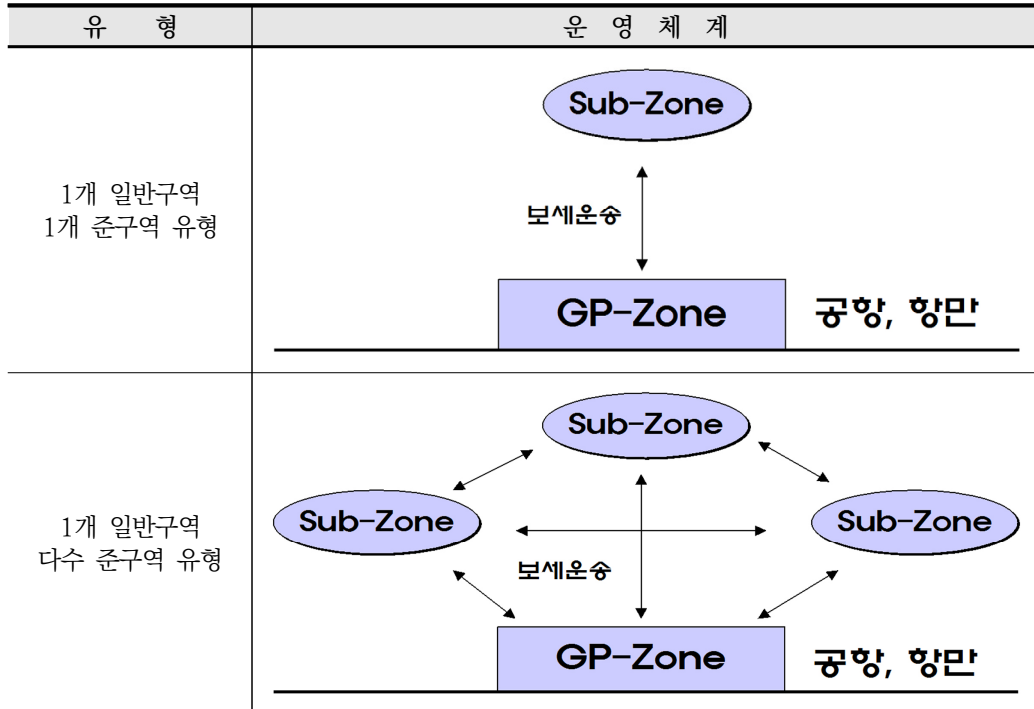
- 일반구역, 준구역 운영체계는 〈표 III-4〉를 보면 주로 공항·항만의 주변에 위치한 일반구역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개 혹은 여러 개의 준지역이 하나의 큰 단위로 이루어져 있음⁵⁰⁾

48) 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49) 상동

50)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표 III-4〉 일반구역, 준구역 운영체계



자료: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p.32

- 일반구역의 주요 해외반입물품으로는 〈표 III-5〉를 보면 자동차/차량, 소비재, 가전제품, 전자제품, 원유/석유 순이며 준구역은 원유/석유, 전자제품, 자동차 부품, 의약품 등이 있음
- 석유정제 산업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표 III-5〉 주요 해외 반입물품

(단위: 백만달러)

일반구역	반입액	준구역	반입액
자동차/차량	33,269	원유/석유	64,822
소비재	12,781	전자제품	15,890
가전제품	11,153	자동차 부품	13,605
전자제품	10,954	의약품	6,416
원유/석유	9,665	기계/장비	6,104
의류/직물	8,907	석유화학	2,606
기계/장비	7,731	화학	1,498
기타 전자제품	5,915	기타 전자제품	1,316
금속 및 광물	4,850	플라스틱/고무	724
의약품	3,615	비행기	722
자동차 부품	2,457	금속 및 광물	513
렌즈, 의료기구	777	소비재	448
음료	733	전자 기계	422

자료: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 2015*, MAIN FOREIGN-STATUS PRODUCTS RECEIVED IN U.S. FTZs, p.32

2) 관리, 운영권자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은 정부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상무부 장관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역할을 나누어 운영하며 역할은 〈표 III-6〉에 정리되어 있음⁵¹⁾
- 자유무역지역 위원장은 자유무역지역의 설립 시 공익성을 검토하고 설립허가를 취소 등을 하며 1년마다 의회에 성과를 보고함

51)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 2015*

- 세관은 화물 반출입을 통제하며 물품 양도를 허가함
- 항만청장은 세관에 업무권한 부여가 가능하며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해서는 운영자가 실질적인 관리자로 기록을 책임지며 운영자의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세관에 보고하는 간접적인 형태를 띠고 있음⁵²⁾
- 항만청장은 위원회의 대리인 역할을 하며 화물반입·운영·이동 등을 맡고 있으며, 구역 가동을 승인하고 필요시 운영·작업활동을 금지시키며 재고물품, 장부·보안·보관상태를 확인하기도 함

〈표 III-6〉 관리감독 역할 구분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세관	항만청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지역 심의·인가 - 관련규정 제정 - 역내작업 제한·금지 - 설립자·운영자 감독 - 벌칙부과·설립허가 취소 - 의회에 성과 보고 - 공익성 검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화물 반출입 통제 - 세수 관리 - 화물관련 법령 준수 확인 - 물품 양도 허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원회 대리인: 구역 관리 - 화물반입·운영·이동 등 관리 - 설립·허가 취소 자문 - 구역 가동 승인 - 운영자 담보(Bond) 설정 - 벌칙 부과 - 필요시 운영·작업활동 금지

자료: 장근호, 『자유무역지역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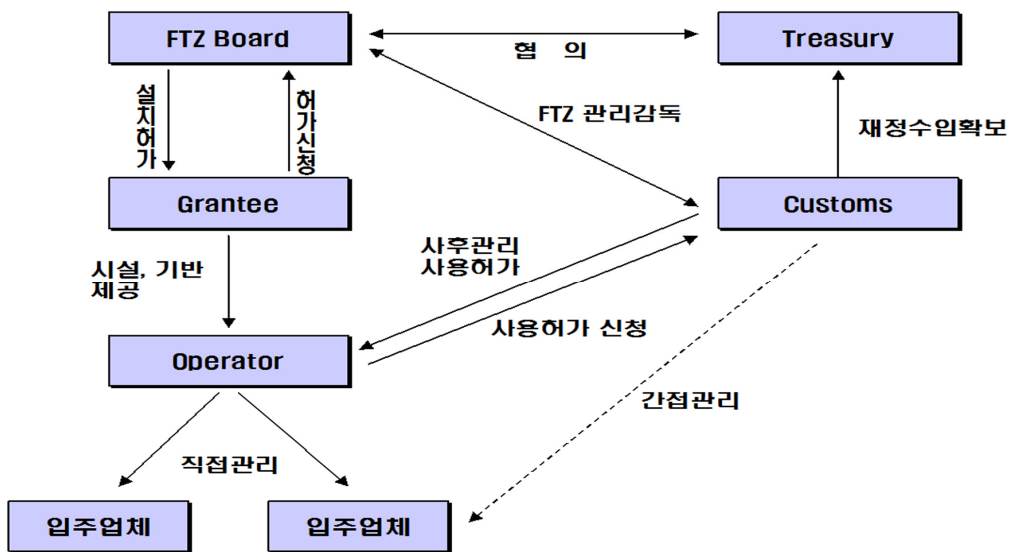
- 자유무역지역은 [그림 III-1]과 같이 설립자(grantee), 운영자(operator), 사용자(user)에 따라 역할이 나뉘어짐⁵³⁾
- 설립자는 허가받은 공공기관(자치단체, 지방항만청 등)으로 시설·설비를 제공하며 장부 기록을 관리하여 매년 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일반 기업체도 설치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나 공공기관이 우선됨
 - 설립자는 자유무역지역 설립을 허용받은 후 자유무역지역에 필요한 건물, 창고, 하역시설, 도로, 철도, 공단부지와 연료공장부지, 전기, 상하수도 등의 인프라를 만드는 역할을 함

52) 백종실,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년 4월호, 2003.4, pp.64~74

53)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 설립자는 해당 지역의 발전을 위해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 자유무역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승인 여부를 결정함⁵⁴⁾
 - 자유무역지역의 확장, 제조허가, 준구역의 허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운영자를 선정함
- 준구역의 경우에는 개별 기업의 신청을 받은 지자체나 공공기관이 위원회에 신청을 하고 지정을 받는 형식임
- 운영자는 설립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유무역지역을 실질적으로 운영·관리하는 역할을 수행함
 - 항만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담보를 제공해야 함
- 사용자는 설립자와 운영자와의 계약을 통해 자유무역지역 내의 건물을 빌려 가공 등을 하는 입주업체로서 기존에 위원회가 정한 회계기입 방법을 준수하며 장부를 기입해야 함

[그림 III-2]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관련 주체 간 연관도



자료: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p.93

54)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나. 관련 법

- 자유무역지역법은 Title 19 United State Code(이하 USC)에 규정되어 있으며, 19 Code of Federal Regulations(이하 CFR)에도 명시되어 있음
 - 자유무역지역법은 19 U.S.C 81a-81u, 19 CFR 146 FOREIGN-TRADE ZONES, 15 CFR 400 REGULATIONS OF THE FOREIGN-TRADE ZONES BOARD에 규정됨

- 미국 관세법에는 자유무역지역법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자유무역지역법도 관세법의 일부로서 관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미국 세관은 관세법과 자유무역지역의 법을 집행하는 역할을 함

다. 입주자격 및 혜택

1) 입주자격

- 위원회가 운영기간, 반입물품 혹은 작업방법을 제한할 수 있지만 입주가 가능한 사용자에 대한 조건은 없음

- 자유무역지역은 위원회의 설립에 대한 허가가 있어야 하며, 입주 업체는 항만청장의 작업개시 승인이 있어야 작업이 시작될 수 있음
 - 위원회는 설립을 허락하고 운영인에게 관리감독을 위임한 뒤 세관이 물품 반입을 승인해야 자유무역지역의 작업이 시작 가능함
 - 작업 개시 신청의 경우, 허가는 최대 4개월이 걸리기도 함

2) 혜택

- 자유무역지역에는 관세와 종가세가 유예되고 물품이 저장되거나 가공의 과정을 거치며 자유무역지역에서 국내(관세영역) 반입 시에는 관세가 부과됨
 - 수입금지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상품의 자유무역지역 내 반입 가능함
 - 국내에서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된 물품은 수출로 인정하여, 화주가 신청 시 수출 또는 선적 여부에 관계없이 관세 환급 가능
 - 물품의 저장, 시험, 세척, 제조, 재포장, 전시, 수리 등 허용하며, 일시적인 전시나 시험을 위해서 반입이 가능함⁵⁵⁾
 - 장차기간이 무제한이므로 통관시점을 조정하여 관세납부 연기가 가능하여 물류기지로 활용 가능

- 미국 자유무역지역은 원료과세와 제품과세 중에 낮은 관세율을 선택할 수 있음
 - 물품 제조에 사용된 내국 원재료 같은 경우에는 과세가격에서 공제받을 수 있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미국으로 반출되는 물품의 경우에는 추가된 부가가치에 대하여 세금을 내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 중에서 제조 과정에서 이용한 국내 원재료에 대해서는 과세가격에서 공제가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 물품 반입 시 51% 이상 부가가치가 발생하였을 경우 미국산 표시가 가능하며 원산지 표시의무를 면제함⁵⁶⁾

55)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56) 상동

라. 규제 및 사후관리

- 항만청장은 자유무역지역 관리감독을 세관에 권한 부여가 가능한데 사후심사, 재고물품, 장부·보안·보관상태 조사 등이 있음⁵⁷⁾
- 세관은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관리감독을 하기보다는 사후심사를 통해 관리하며 운영자가 실제적인 관리를 하고 있음
- 기본적으로 운영인이 물품을 관리하지만 물품 운송, 반입, 작업, 반출의 모든 단계에서 세관의 허가가 필요하며 관리를 엄격히 진행하고 있음
 - 세관은 역내에서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의 대표자 역할임
 - 설치를 자유무역지역 위원회에서 허가하였어도 세관이 사용허가를 해주지 않으면 자유무역지역을 사용할 수 없음
 - 기본 운영을 맡고 있는 운영자의 관리를 위해서 화물 반입, 처리, 제조, 전시나 폐기를 할 때 사용자는 운영자의 동의를 구해야 하며 동의가 없다면 항만청장은 허가를 내주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에서 작업을 시작한 때에 행해진 보안점검뿐만 아니라 세관은 사후심사와 이행조사를 시행하여 운영자의 보안기준과 세부항목을 점검함
 - 세관은 위반, 도난 등이 일어났을 때 자유무역지역에 대하여 전체 보안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작업정지, 허가 취소를 할 수도 있음
 - 보안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되었거나 도난사고가 발생한 경우
 - 운영인이 안전장치를 설치하지 않을 경우
 - 화기(Title II firearms)를 보관하는 고도의 보안설비일 경우

57)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 운영자와 사용자의 재고·재무장부에 대해서 엄격한 회계조사를 통해 사후관리를 진행하고 있음⁵⁸⁾
 - 이행검사(compliance review)보다는 덜 빈번하게 실행되는데 그 빈도는 기밀에 붙이고 있음
 - 사후심사는 물품의 성격, 재고규모, 적발내용 등에 따라 1주에서 수개월이 소요될 수 있고 수년간의 누적된 작업내역이 대상이 될 수 있음
 - 사후심사는 원칙적으로 미리 고지되는데 미리 고지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평가되면 불시 점검이 가능함
 - 세관은 운영자, 사용자를 적발된 내용에 대해 면담을 하여 현장감사관리실(Field Regulatory Audit management) 심사를 받게 하며 결과가 나오면 항만청장이 조치를 취함
 - 사후심사와 이행조사는 상호 보완적인 철저한 조사임

- 이행조사는 세관직원이 자유무역지역 내 상태, 절차, 장부, 거래를 실물검사 혹은 관찰하기 위한 방문임⁵⁹⁾
 - 운영자(사용자)가 규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사후심사 전에 감사팀에게 보낼 정보를 취합하고 위험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시행됨

- 사전 고지되지 않는 이행조사는 장부나 물품 상태 등에 대한 현장검사로서 위험관리평가에 따라 3가지 위험군으로 나뉨⁶⁰⁾
 - 고위험군은 1년에 최소 3번, 중위험군은 1년에 최소 2번, 저위험군은 2년에 최소 1번의 검사가 실시되고 있음
 - 운영자는 세관조사에 협력할 의무가 있으며 세관 재량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직원이 세관직원을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음

58) 19 CFR 1646

59)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60) 상동

- 이행조사는 원칙적으로 사전에 고지되지 않는데 필요하면 미리 통보할 수 있음
 - 조사는 대개 1~2일 이내에 완료되는데 다만 적발내용에 따라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그 빈도는 개별 자유무역지역의 위험도 평가에 따라 결정됨
 - 세관은 크지 않은 위반에 대해서는 구두로 경고하며 사후 검사를 통하여 관리하고 있음
- 운영자는 일반적인 규정 아래 자유무역지역 내의 운영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게 됨⁶¹⁾
- 운영자는 물품 인수, 배송, 보관, 장부기록, 폐기, 제조, 처분, 보안 등의 모든 과정을 관리하며 입주기업의 수준에 따라 관리 강도가 달라짐
 - 법에 규정된 의무를 하지 않는 운영자에게는 손실청구(liquidated damage)를 하거나 벌금을 내게 함
- 입주기업(사용자)에 대한 반출입 및 재고는 세관이 맡고 있으나, 운영자가 정보시스템을 통해 재고관리를 하는 간접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운영자는 세관에 보고해야 함⁶²⁾
- 운영인은 1년에 최소한 한 번은 재고조사를 실시하여 발견된 오차를 보고해야 하며 연차 정리보고서를 작성하여 세관에 보고해야 함
 - 물품 도난이 발생되면 최고 25만달러 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해당되는 중죄로 분류됨
 - 물품 운송, 전달, 인수 과정에서 고용한 사람에 대해 신원정보 요구가 가능하며 필요한 경우 신원조사를 요청할 수 있음
- 운영자는 내국물품을 포함한 모든 물품의 일시장치나 반입 이후부터 반출까지 모든 과정을 위해 재고 장부시스템에 작성하여 보관해야 함⁶³⁾
- 물품이 반입되는 과정에서 신고서와 다른 물품은 항만청장에게 알려야 하며 물품의

61) 19 CFR 146, 113

62)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63) 상동

가격, 품목분류 등의 자료를 보관, 유지해야 함

- 장부기록에 남아 있지 않아 내국물품임이 확인이 안 되면 외국물품으로 간주가 되므로 유의해야 함
- 세관의 심사를 위하여 장부기록은 수입시점이 아닌 물품이 양도된 때부터 5년간 보관해야 함
- 재고 장부기록의 책임은 운영자에게 있음

2.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제도

가. 개요

- 대만의 자유무역지역은 수출가공구(Export Processing Zone, EPZ)와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 FTZ)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출가공구는 생산중심형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하며, 1966년 이후 대만의 중서부 및 남서부 지역에 총 10개가 지정되어 있음
 - 지난 50년간 주요 산업 전환 과정을 통해 생산·물류 복합형 자유무역지역으로 발전함
 -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에 해당하며, 2003년 이후 대만의 공항만을 따라 총 7개가 지정되어 있음

-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제도 도입 과정에서 벤치마킹 대상이었던 대만의 수출가공구(EPZ)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함
 - 수출가공구는 외국인투자 유치를 통한 산업발전을 목적으로 한 제도로 조세감면, 행정편의 제공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제도와 유사함
 - 반면 자유무역지역(FTZ)의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 소득세 면제 혜택 이외에는 임대료 감면 등의 특별한 우대가 없음

1) 설립목적 및 연혁

-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국제무역의 확대, 산업투자의 유치, 최신 기술의 도입, 일자리 증가를 목표로 하며, 이를 위해 수출입의 자유화, 각종 수속 절차 간소화, 수입관세 면제 등의 다양한 혜택을 부여함⁶⁴⁾

64) 대만 수출가공구관리국, <http://www.epza.gov.tw/english/page.aspx?pageid=ecc3eefec73b3559>, (검색일자: 2017. 6. 9)

-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지난 50년간 경제성장 및 산업의 발전에 따라 주요 제품 및 운영 메커니즘을 10~20년마다 개혁한바, 주요 산업 전환 과정을 다음의 4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⁶⁵⁾
 - 1단계(1966년~1986년)는 초기 노동집약적 전통 산업의 성립 단계로 주요 제품은 의류(티셔츠), 가죽, 가전제품 등과 같은 low-end OEM 제품이었음
 - 2단계(1987년~1996년)는 산업 구조조정 단계로 주요 제품은 카메라 렌즈 등과 같은 고부가가치 전자제품, 의류 등과 같은 middle-end OEM 제품이었음
 - 3단계(1997년~2006년)는 변화 및 확장의 단계로 주요 제품은 high-end and intermediate-end IC, 광학, LCD, 디지털카메라, 정보 소프트웨어 서비스와 같은 high-end OEM 제품임
 - 4단계(2007년~2016년)는 산업클러스터 개발 단계로 주요 제품은 high-end key IC, TFT-LCD, 정보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R&D와 같은 고부가가치 제품임
 - 2017년부터는 혁신을 촉진하는 단계로 주요 제품은 체계적인 3D IC, AR/VR 애플리케이션 제품, 클라우드 컴퓨팅, 문화 디자인과 같은 시스템 통합 제품임

[그림 Ⅲ-3] 대만 수출가공구의 주요 산업 전환 과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전통 산업	산업 구조조정	변화 및 확장	산업클러스터 개발
1966~1986	1987~1996	1997~2006	2007~2016
제조업(OEM) 의류(T-shirts), 가죽, 수공예품, 플라스틱, 가전제품 등	제조업(OEM) 카메라렌즈, IC 등, 의류(dark suits), 금속(볼트, 너트, 등), 소비재	제조업 (주로 OEM, ODM) 자본·기술 집약 전자, 광학·정밀 산업,	제조업(OEM&ODM) 고부가가치산업 : IC, LCD, 광학 및 디지털콘텐츠
제조 가공	제조 가공 무역	R&D 제조 마케팅 유통	R&D 제조 브랜딩 물류

자료: 대만 수출가공구관리국, *An Investment Guide to Export Processing Zones in Taiwan*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65) 대만 수출가공구관리국, *An Investment Guide to Export Processing Zones in Taiwan*

- 즉, 우리나라와는 달리 대만은 수출가공구를 세계무역환경 및 경제발전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지속적으로 육성·발전시키고 있음⁶⁶⁾
- 우리나라는 무역 및 경제여건 변화에 따라 자유무역지역, 경제자유지역, 외국인투자 지역 등 여러 경제특구제도를 시행하고 있음

2) 지정 및 운영현황

-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1966년 12월 카오슝 수출가공구 설치를 시작으로 타이쑹(Taichung) 지역 내 3개, 까오슝(Kaohsiung) 지역 내 6개, 핑퉁(Pingtung) 지역 내 1개 등 총 10개의 수출가공구가 지정되어 있음⁶⁷⁾
- 대만의 경제성장에 따라 1990년대 중반 이후에는 생산단지, 소프트웨어단지, 물류단지 유형의 다양한 기능을 포함하는 종합무역지역으로의 발전을 거듭해왔음
- 2015년 4월 기준 621개 기업이 대만 내 수출가공구에 설립 승인을 받았으며, 투자금액은 178억 5천만달러, 약 8만명 이상이 고용되어 있음⁶⁸⁾
- 한편, 지정 지역은 주로 대만의 중서부 및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음⁶⁹⁾
 - 1960년대 수출가공구를 지정할 당시 중남부 지역에 노동인력이 많았고 타이페이 가 북쪽에 위치하여 중남부 지역에 대한 정치적 배려도 있었음

66) 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81

67) 대만 경제부 투자 포털, <http://investtaiwan.nat.gov.tw/showPageng249?lang=eng&search=249>, (검색일자: 2017. 6. 12.)

68) 대만 경제부 투자 포털, <http://investtaiwan.nat.gov.tw/showPageeng249?lang=eng&search=249>, (검색일자: 2017. 6. 12)

69) 이성우 외 2인(2014), p.74

〈표 Ⅲ-7〉 대만 수출가공구 지정 현황 및 주요 산업

지역	수출가공구	면적(km ²)	유형	주요 산업
타이중	Taichung EPZ	0.262	생산단지	광전자산업
	Chungkang EPZ	1.77		패널디스플레이, 정밀 장비 및 부품
	Taichung Software-base Technology Park	0.05	소프트웨어 단지	ICT 서비스산업 등 지식산업, 문화산업(디지털 콘텐츠), 중국어 전자 상거래, 클라우드 산업, 디자인, R&D 등
카오슝	Nantze EPZ	0.978	생산단지	집적회로구조 및 테스트·공정 장비 LCD, 광전자산업
	Nantze 2nd EPZ	0.085		
	Kaohsiung EPZ	0.724		
	Chengkung Logistics Park	0.084	물류단지	물류기능
	Kaohsiung Software-based Technology Park	0.079	소프트웨어 단지	정보 소프트웨어, 디지털콘텐츠, R&D, 디자인
	Linkuang EPZ	0.09	생산단지	LCD, LED 산업
Pingtung EPZ	1.24	자동차부품, 금속제품		

자료: 대만 경제부 투자 포털, <http://investtaiwan.nat.gov.tw/showPage?lang=eng&search=249>, (검색일자: 2017. 6. 12)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수출가공구의 관리체계는 대만 경제부(Ministry of Economic Affairs, MOEA)와 수출가공구관리국(Export Processing Zone Administration)에서 2단계로 관리되고 있으며, 국가기관에서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음⁷⁰⁾
- 수출가공구관리국에는 타이중(Taichung), 충강(Chungkang), 핑퉁(Pingtung), 카오슝(kaoshung) 등 4개의 분점을 두고 있음
- 수출가공구관리국에서 직접 관리하는 EPZ도 있으며, 분점에서 관리하기도 함

70) 이성우 외 2인(2014), p.73

〈표 III-8〉 대만 수출가공구 운영기관 및 담당 업무

구분	담당 업무
행정원 (경제부, 재정부 등 주요 경제부처의 장)	수출가공구의 설치 및 경영감독권 → 경제부에서 제출받은 서류를 심사
경제부	수출가공구의 사업, 위치, 면적 등을 결정, 수출가공구 관리처 업무 관리
수출가공구관리국 (경제부 산하 기관임)	수출가공구의 기획, 투자, 인력관리, 건축물 건설, 보세창고 설립 및 운영 등의 업무를 제공 및 처리
세관	수출가공구 수출입화물의 통관수속을 담당, 화물량 및 금액 검사, 물품의 폐기, 반출입, 보관, 판매허가

자료: 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p.79

나. 관련 법

- 대만 수출가공구의 법적 근거는 「가공수출구 설치관리조례(加工出口區 設置管理條例)」를 기본으로 함
 - 시행세칙과 가공수출구 관리처 및 분처 업무 관리규칙을 두고 있음
- 타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수출가공구 설치관리조례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법률을 준용할 수 있다고 정의하고 있음⁷¹⁾
 - 해당 법률에서 언급하고 있는 규정과 관련되어 다른 법률에서 더 우호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면 그 우호적인 법률이 해당 법규정에 우선함

71)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2017/05/24), Article 2

다. 입주 혜택 및 자격

1) 수출가공구의 입주 혜택

- 수출가공구의 주요 입주 혜택은 조세우대, 임대료 감면, 행정절차의 편의 등으로 구분할 수 있음
- 수출가공구 입주업체에 대한 주요 조세우대 혜택은 다음과 같음
 - 다음의 경우 수입관세 및 화물세,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함⁷²⁾
 - 해외로부터 수입한 설비, 원재료, 연료, 소모품, 반제품, 샘플, 실험용 동식물, 보세창고 또는 환적에 필요한 최종재 등
 - 수출가공구 내 신축 표준 공장 또는 건물 취득 시 취득세, 등록세 면제함⁷³⁾
 - 영리사업소득세(business income tax)의 경우 중개운수업의 영리사업소득세액은 영업수입의 10%로 계산함⁷⁴⁾
 -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영업세의 영세율 적용함⁷⁵⁾
 - 수출용 물품 및 노동 서비스, 기계류 판매, 원재료, 원자재, 연료 및 완제품, 과학 산업 내 산업 또는 보세공장 및 창고
 - 수출가공구 내 사업자가 사용하는 자체 생산을 위한 공장은 영업가옥세 3%에서 절반을 감면하여 1.5%를 징수함⁷⁶⁾
- 저렴한 임대료와 행정절차 편의 등의 혜택은 다음과 같음
 - 수출가공구의 임대료는 매월 평균 17NT\$(제곱미터당) 로 저렴함

72)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13

73)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13

74)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14

75) Business Tax Law, Article 7

76) House Tax Act, Article 15

- 2017년 6월 현재 원화(KRW) 기준 약 638.52원임

- 수출가공구관리국에서는 투자 관련 일체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대리 처리함
 - 신청수속, 공장설립, 회사 등록, 수출입허가, 제반 운영 관련 모든 사항을 관리기관인 수출가공구관리국에서 직접 처리하기 때문에 행정절차가 편리함

2) 수출가공구의 입주 자격

- 대만 수출가공구 내 모든 토지는 임대만 가능하며, 입주를 희망하는 기업은 관련 서류와 신청서를 수출가공구관리국 또는 분점에 제출해야함⁷⁷⁾
 - 임대기간은 보통 20년이며, 표준공장은 보통 10년으로 매년 갱신 가능함
- 수출가공구에 설립 및 운영 가능한 산업군은 약 20개⁷⁸⁾이며 투자규모와 관계없이 해당 수출가공구의 유치업종에 해당하지 않으면 입주가 불가능함
 - 제조, 조립, 연구개발, 무역, 컨설팅, 기술서비스, 보세창고, 운송, 선적 및 하역, 포장 및 수리 등이 있음⁷⁹⁾
- 수출가공구에 설립을 신청하는 사업체는 다음의 규정을 준수해야 함⁸⁰⁾
 - 기본 산업이 국내에 설립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 수요가 있을 것
 - 계획 물품이 국내외에서 포화상태에 있지 않을 것
 - 국내 생산 공정에서 특별한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
 - 토지, 용수, 전력 등을 경제적으로 활용할 것

77)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10

78) 대만 수출가공구관리국, *Business Classifications Allowed to be Established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2017/05/24)*

79)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2017/05/24), Article 3

80) Regulations on Examination Measures for Establishment Application of Business Entity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

- 공중 안전, 환경, 위생 등을 침해하지 않을 것
- 또한 수출가공구에 설립을 신청하는 사업체는 건전한 재무 계획뿐만 아니라 각 투자 유형별로 다음과 같은 최소투자규모를 충족해야 함⁸¹⁾
 - 창고업 8천만NT\$ 이상
 - 운송업 5천만NT\$ 이상
 - 자체 건물을 설립하는 제조업 2천만NT\$ 이상
 - 임대 건물에 입주하는 제조업 1천만NT\$ 이상
 - 기타 산업 100만 NT\$ 이상

라. 규제 및 사후관리

- 수출가공구의 출입통제는 엄격한 편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음
 - 수출가공구 내에는 필수 관리 인력, 경비원, 직원 및 부양가족, 입주업체 소속 직원을 제외하고는 거주와 출입을 엄격히 통제함⁸²⁾
 - 입주업체는 직원의 사진 및 이름표를 수출가공구관리국 및 분점에 제출하여 출입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수출가공구 및 분점의 지정된 장소에서 출입하는 사람 및 차량은 세관 및 경비대에 의한 점검을 받아야 함
 - 다만, 이를 위반하는 경우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6천NT\$ 이상 3만NT\$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⁸³⁾
 - 사람과 차량의 통행은 수출가공구관리국이나 분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만약 그렇지 못한 경우 경비원은 차량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⁸⁴⁾

81) Regulations on Examination Measures for Establishment Application of Business Entity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3

82)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0

83)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4

84) Management Regulations of Administration and Branche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30

- 입주업체 직원은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제시해야 하며, 모든 차량은 차량의 앞쪽에 차량통행증을 부착해야 함⁸⁵⁾
 - 이와 관련하여 출구에서 세관 및 경비원은 필요한 점검을 수행할 수 있음
- 입주업체 직원의 출입증은 종업원 출입증, 단기통행 출입증, 임시 출입증 3가지로 구분됨⁸⁶⁾
 - 종업원 출입증은 수출가공구관리국, 분점, 다양한 목적의 사업자, 시민단체, 제조업의 운영 또는 연락사무소 종업원의 사용을 위한 것
 - 단기통행 출입증은 단기간에 수출가공구 안팎에 있는 인원의 단기 사용을 위한 것
 - 임시 출입증은 수출가공구 안팎에 있는 직원의 일일 사용을 위한 것
- 한편, 입주업체 직원 출입증과 차량 출입증은 2년에 한 번씩 교체됨에 따라 유의해야 함⁸⁷⁾
 - 다음해 1월에 새로운 출입증이 사용될 수 있으며, 구 출입증은 매년 1월 10일 이전에 발급기관을 통해 반환해야 함

- 입주업체는 수출가공구관리국 또는 분점에 매월 영업매출, 고용인원, 토지사용 현황 등을 보고해야 함
- 수출가공구관리국은 불시점검을 통해 기업들의 현황을 파악할 수 있으며, 영업을 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강제로 내보낼 수 있음

- 또한 수출가공구역 내에서 보관, 전시, 재조립, 가공 및 기타 처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수출가공구관리국 또는 분점 및 세관의 감사를 위해 화물의 수량을 장부에 기록해야 함⁸⁸⁾

85) Management Regulations of Administration and Branche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31

86) Management Regulations of Administration and Branche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32

87) Management Regulations of Administration and Branches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35

- 부족 또는 분실이 발생할 경우 입주업체는 15일 이내에 세관 및 세무당국과 협의하여 수출가공구관리국 또는 분점에 조사 결과를 보고해야 함
- 입주업체가 허위 기록 또는 감사를 거부한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음⁸⁹⁾
 -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과 3만NT\$ 이상 15만NT\$ 이하의 벌금
 - 정해진 기한 내에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입주업체는 정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연속적으로 불이익을 받음
 - 중대한 범죄가 발생한 경우 입주업체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품의 수출입 금지
- 입주업체가 수출가공구관리국 또는 분점의 승인을 받지 않고 화물을 인도하는 경우 해당 업체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음⁹⁰⁾
 - 경고 또는 3만NT\$ 이상 15만NT\$ 이하의 벌금을 부과함
 -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품의 수출입이 금지됨
- 입주업체가 관리비, 절차 수수료 또는 서비스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조치를 받음⁹¹⁾
 - 입주업체는 6만NT\$ 이상 3만NT\$ 이하의 벌금을 지정된 기한 내에 지불해야 함
 - 만약 규정된 기한 내에 상기 수수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입주업체는 1개월 이상 1년 이하의 기간 동안 상품의 수출입이 금지됨
- 밀수, 위법, 탈세사건 등과 관련된 모든 입주업체는 세관 규정 또는 기타 관련법에 따라 처리됨⁹²⁾

88)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18

89)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3

90)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2-1

91)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5

92)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6

- 마찬가지로 입주업체의 물품 수출가격을 감사할 수 있으며, 견적가가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관련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음⁹³⁾
- 한편, 수출가공구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있을 경우 중국어본이 우선하도록 규정함⁹⁴⁾

93)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28

94) Statute for the Establishment and Administration of Export Processing Zone Article 32

3. 중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가. 개요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내에 최초로 설립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기존에 설립되었던 4개⁹⁵⁾의 보세지역의 기능을 무역, 투자, 자본 등의 자유화 등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한 것임⁹⁶⁾
 - 과거 중국의 경제성장을 이끈 보세구가 화물보관과 가공무역 등 제조업에 치중되었다면, 상하이자유무역구는 관세 철폐와 금융서비스 개방, 자본과 인력의 자유로운 이동 등을 포함함
- 본 연구에서는 중국의 자유무역지역 가운데 대표성을 지닌 상하이자유무역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함
 - 2017년 6월 현재 중국의 자유무역구는 20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포함하여 총 11개 지역에 지정되어 있음
 - 다른 후발 자유무역구⁹⁷⁾의 경우 상하이자유무역구의 기존 내용 및 성과를 기초로 운영하되 각 지역별 기능 및 특징을 구분⁹⁸⁾하고 있음

1) 설립목적 및 연혁

- 중국 국무원이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

95)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 양산종합보세구, 푸둥종합보세구

96) 김은우,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출범이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주는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11, p.147

97) 2015년 4월 톈진, 광둥, 푸젠 등 3개 지역 출범, 이후 2017년 4월 랴오닝,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등 7개 지역 출범

98)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357>, (검색일자: 2015. 3. 27)

方案)」을 비준하고 2013년 9월 상하이자유무역구(China(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가 정식 출범함⁹⁹⁾

- 초기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Test-Bed(시험구)로서의 기능을 가진 개념으로 도입되었으며, 시범업무(Pilot Program)를 운영하여 점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음
 - 따라서 세수 혜택보다는 제도 개선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
- 초기 외국인투자 유치,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성과를 바탕으로 2014년 12월에는 루자쭈이금융지구, 진차오개발구, 장지양첨단기술단지 3개 지역을 추가 지정함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투자 자유화, 무역 편리화, 금융 국제화, 행정 간소화에 목적을 두고 있음¹⁰⁰⁾

- 즉,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경제성장의 양적 확대보다는 경제구조 업그레이드를 위한 조치로서의 의미가 있음¹⁰¹⁾
 - 의료, 교육, 문화, 통신 등 WTO 가입 10여 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외국자본 진입 장벽이 높았던 분야에 대한 장벽완화 시범조치가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를 통해 실시됨

□ 이에 따라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주요 추진정책 방향은 다음과 같이 무역, 투자, 금융, 행정관리 부분으로 구분됨¹⁰²⁾

- 무역 부분은 통관 절차 간소화, 자동통관시스템 구축, 단일창구(one-stop) 정보플랫폼을 활용한 전자정보 제공
- 투자 부분은 외국인투자 가능 분야 확대, 내국민 대우 확대 실시
- 금융 부분은 자유무역계좌 사용, 위안화 자유태환, 금융 서비스업 확대 개방 등

99) 김은우(2013) p.146

100)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

101) Kotra,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16. 11, p.59

102) 주상하이총영사관, 『중국(上海) 자유무역시범구』, 2017. 5. 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 행정관리 부분은 세관 및 검사검역 간소화, 기업설립 및 변경업무 창구 단일화, 서류 간소화 등

2) 지정 및 운영현황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지정하며, 관리주체로 ‘상하이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를 두고 있음¹⁰³⁾
 - 국무원이 사업을 추진하고 상하이시가 조직을 실행하며, 각 유관부문의 협조를 통해 공동으로 건설과 관리를 수행하도록 함¹⁰⁴⁾
- 2017년 6월 현재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 양산종합보세구, 푸둥종합보세구, 루자쭈이금융지구, 진차오개발구, 장지양첨단기술단지 등 총 7개의 지역으로 구성됨¹⁰⁵⁾
 - 와이가오차오보세구는 중국 보세구 중 최대 규모이며, 국제무역, 국제물류, 보세가공, 보세상품 전시 등이 모두 가능한 종합보세구역임
 - 와이가오차오물류단지는 물류창고, 국제배송, 국제 재수출·환적 기능을 수행함
 - 양산보세항구는 보세, 보세물류, 보세가공 기능을 수행함
 - 푸둥공항보세항구는 국제항운센터 핵심 지역으로 항공화물저장, 금융리스, 수출가공, 상품전시 등의 다양한 기능을 수행함
 - 루자쭈이금융지구는 국가급 금융무역지구 기능을 수행함
 - 진차오개발구는 가공수출, 물류창고, 운송, 리테일 기능을 수행함
 - 장지양첨단기술단지는 집적회로, 바이오의약, 소프트웨어, 신에너지 등 연구개발 기능을 수행함

103)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http://en.china-shftz.gov.cn/Government-affairs/Organization/>, (검색일자: 2017. 6. 23)

104)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내용 및 전망』, 한중경제포럼, 2013. 11. 11, p.6

105)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http://en.china-shftz.gov.cn/About-FTZ/Introduction/>, (검색일자: 2017. 6. 23)

〈표 III-9〉 상하이자유무역구 구성 및 특징

지역	운영개시	면적(km ²)	특징	비고
와이가오차오보세구	1990	10	중국 최초, 최대의 보세구	설립초기 기존의 상하이 4개 보세지역을 지정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	2004	1.03	중국 최초 항구연동 물류단지	
푸둥공항 종합보세구	2010	3.59	항공운송 위주	
양산항 종합보세구	2005	14.16	해운위주, 중국최초의 보세항구	
루자쭈이금융지구	1990	6.89	다수의 은행 본부 소재	2014년 12월 기존의 상하이 3개 보세지역을 추가 지정
진차오개발구	1990	20.48	국가급 경제기술개발구	
장지앙첨단과학기술구	1992	25	다수의 국가급 프로젝트 수행	

자료: 주상하이 총영사관, 『중국(上海) 자유무역시험구』, 2017. 5. 16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4년 12월 추가 지정된 루자쭈이금융지구, 진차오개발구, 장지앙첨단기술단지 3개 지역은 금융, 첨단기술단지 기능을 강화해 다국적기업 및 중국 금융, 연구개발기관을 적극 유치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됨¹⁰⁶⁾
- 기존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와이가오차오보세물류구, 양산종합보세구, 푸둥종합보세구 4개 지역은 지리적으로 외각에 위치했으며 자유무역구 이전부터 운영돼 온 보세구의 강점을 활용하려는 취지가 강했음

106)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446>, 2014. 5. 14, (검색일자: 2017. 6. 26)

[그림 III-4]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지정 현황



자료: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http://en.china-shftz.gov.cn/About-FTZ/Location/>, (검색일자: 2017. 6. 23)

나. 관련 법

- 중국 자유무역구의 법적 근거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기본으로 함
 - 정부 기능의 변화, 투자부분 개방의 확대, 무역 발전방식의 전환, 금융 자유화, 행정 간소화 등의 주요 내용을 담고 있음

- 타 법률과의 관계를 살펴보면 자유무역구에서는 중국 「해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해관에서도 일괄적으로 관련규정을 관리하고 있음
 - 다만, 외국인투자 유치 등을 위해 기존의 법률¹⁰⁷⁾을 일시적 또는 부분적으로 배제하는 경우는 있음

- 한편, 2017년 3월 중국 국무원에서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구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방안”으로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의 24개 혁신중점사업 등을 설정함¹⁰⁸⁾

다. 입주 혜택 및 자격

1)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입주혜택

-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입주 혜택은 다음과 같음¹⁰⁹⁾
 - 무관세 수출입
 - 화물의 장치기간(보관기간) 무제한¹¹⁰⁾

107)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外资企业法), 「중화인민공화국 중외합자경영기업법(中华人民共和国 中外合资经营企业法)」 등

108) 부록 참고

109) Kotra(2016), pp.44~46, 재인용 및 수정

110) Regulation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Article 19

- 선진입, 후통관
 - 기존의 수입 화물은 선통관 후 구내에 들어올 수 있었지만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에서는 화물이 항구에 도착해서 먼저 구내에 들어온 후 통관이 가능함
-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제
 - 화물을 반입 또는 반출 후 기간 내 일괄신고 및 통관이 가능함
- 스마트 통관검사 관리
 - 자동통관시스템을 통한 무인 대조, 판단, 검사 진행이 가능함
 - 또한 시험구 내 차량 전자정보 등의 기능을 활용해 시간 지체 없이 차량에 적재된 화물의 정보, 세관 제출서류, 컨테이너 번호 등의 인식이 가능함
- 원스톱 신고제도
 - 기업은 상하이 국제무역 '단일창구' 플랫폼에서 정보를 한번 입력하면 세관, 검사 검역 신고를 한번에 완료할 수 있음
- 기업등록절차 간소화
 -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에 대해 외국인투자는 심사허가제도¹¹¹⁾에서 등록제도¹¹²⁾로 변경됨

2)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입주자격

- 상하이자유무역구 우대조치를 받기 위한 조건은 다음과 같음¹¹³⁾
 - 네거티브 리스트의 금지 및 제한 분야로 명시되지 않은 업종일 것
 - 국가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국가안전심사 시행방법」에 따른 안전심사를 거쳐야 함

111) 심사허가제도는 상무부 주관부서가 외국투자자 중국 진출 시 그 투자주체의 자격, 투자분야와 업종, 투자방식, 투자금액, 회사의 정관, 계약 등의 진실성 및 합법성에 대해 심사하고 승인하는 사전관리 형태.

112) 등록제도는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 영역은 그 주체 자격, 투자 분야 등의 사후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심사가 아닌 형식적인 등록만 진행하며 사후의 감독 및 관리에 중점을 두고 있음

113) 주상하이 총영사관(2017)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 일종의 역외계좌인 자유무역계좌(FT계좌)를 개설해야 함

□ 입주자격의 가장 큰 특징은 외국인투자에 대해 ‘자유무역구 외상투자 진입 특별관리 조치(네거티브 리스트)’¹¹⁴⁾에 따라 외국인투자를 금지 또는 제한한 것을 제외한 모든 분야의 외국인투자 및 경영을 허용하고 있다는 것임

○ 2017년 6월 19일 중국 국무원은 2017년 개정판 ‘중국 자유무역구 투자 네거티브 리스트’를 발표함¹¹⁵⁾

- 2013년판과 2014년판은 상하이자유무역구에만 적용되었으나 2015년판은 상하이를 포함한 4개 지역에서, 2017년판은 11개 지역으로 최근 들어 자유무역구의 확대에 따라 적용지역도 확대되었음
- 한편, 중국 정부는 시장 개방 확대, 외국인투자 관리시스템 개혁 등을 목적으로 2018년까지 네거티브 리스트를 중국 전역으로 확대하여 도입하기로 함

114) 중국의 네거티브 리스트(Negative lists) 제도란 원칙적으로 수입의 자유화가 인정된 무역제도에
서 예외적으로 외국인 투자금지(또는 제한) 업종, 분야, 업무 등을 명시하고 나머지 업종, 분야,
업무에 대한 외국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방식임

115)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16/content_5202973.htm, (검색
일자: 2017. 6. 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표 Ⅲ-10〉 중국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 추이

구분	2013년판	2014년판	2015년판	2017년판
시행일자	2013년 10월 1일	2014년 6월 30일	2015년 5월 8일	2017년 7월 10일
적용지역(FTZ)	상하이	상하이	상하이, 광둥, 텐진, 푸젠 등 4개 지역	기존 4개 지역에 저장, 허난, 후베이, 충칭, 쓰촨, 산시 등 11개 지역
산업 유형	18개	18개	15개	15개
조항	190개	139개	122개	63개
	금지: 38개 제한: 152개	금지: 29개 제한: 110개	금지: 37개 제한: 85개	금지: 28개 제한: 35개

자료: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9412>, 2017. 6. 20, 참고하여 저자 작성

□ 2017년 개정판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금지 및 제한 분야는 다음과 같음

- 희토자원 채굴,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우편,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분야의 외국인 투자는 2015년판과 동일하게 금지 혹은 제한됨

〈표 Ⅲ-11〉 중국 자유무역구 네거티브 리스트의 주요 금지 및 제한 분야

구분	주요 내용
주요 금지분야	- 농어업, 희토자원 채굴, 항공교통관제시스템, 지도출판, 법률서비스, 우편, 라디오 및 TV 프로그램 제작, 언론기관 설립 등
주요 제한분야	- 일부 금융업(증권사, 카드사 등), 주요 교통 인프라 구축 등은 합작 또는 합자에 한함(限于合作和合資), - '중국 측 지분통제(中方控股)' 등 일정 조건을 만족해야 가능

자료: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zhengce/content/2017-06/16/content_5202973.htm, (검색일자: 2017. 6. 26) 참고하여 저자 작성

라. 규제 및 사후관리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입주업체의 투자를 제한함¹¹⁶⁾
 - 중국의 공익 또는 중국의 법이나 규정을 저해하는 경우
 - 중국과 관련 국가(지역) 간의 관계를 저해하는 경우
 - 중국이 체결한 국제조약에 위반되는 경우
 - 중국으로부터 수입 금지된 물품 또는 기술을 수반하는 경우

- 또한 출입통제의 경우 사람과 물품의 이동을 자유롭게 하고 있음¹¹⁷⁾
 - 승용차 및 화물차량의 경우 대부분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며, 서류 심사 및 불시 검문 등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통제가 이루어짐
 - 진출입 구역은 트래픽 관리 및 안전관리 등을 위해 별도로 지정되어 있고 검사 인력(경비원 등)이 상주해 있음

-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 방식¹¹⁸⁾으로 ①종합 법률 집행 ②정보 공유 ③기업 연간보고서 공시 및 비정상 경영 리스트 작성 등 3가지의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제도를 완비하고 있음
 - 종합 법률 집행¹¹⁹⁾
 - 입주업체의 독점계약과 관련한 조사 및 법 집행은 법률에 따라야 함
 - 정보 공유¹²⁰⁾
 - 관리기관 및 관계부처는 기업의 신용 및 인원에 관한 정보를 기록하고 자유무역구

116)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Notice of the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the Administration of Filing of Overseas Investment* 참고하여 저자 작성

117) 관세청 통관지원국 수출입물류과

118) Regulation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Article 36

119) Regulation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Article 38

120) Regulation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Article 39

내 보조플랫폼(PFTZ sub platform)¹²¹⁾으로 공유해야 함

- 이를 위해 입주기업 및 관련 책임자의 물품 통관, 입찰 등의 신용정보를 문의하여 기록해야 함
- 신용을 가진 기업 및 개인에게는 편의를 제공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제한 및 처벌을 부과함

○ 기업 연간보고서 공시 및 비정상 경영 리스트 작성¹²²⁾

- 모든 기업은 규정에 따라 기업의 연간보고서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의 진실성 및 합법성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 또한 기업의 연간보고서의 국가 기밀, 사업 비밀, 개인정보가 포함된 내용을 제외하고는 규정에 따라 공개해야 함
- 한편, 공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기업에 대해서는 비정상 경영 리스트를 작성하여 공개해야 함

□ 한편, 상하이자유무역구에서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제도를 두고 있는 이유는 네거티브 리스트 이외의 영역의 외국인투자는 심사허가제도에서 등록제도로 변경됨에 따라 외국인투자의 진입이 보다 용이해지면서 사중(事中) 평가분류, 사후(事后) 연동상벌제도 관리감독의 필요성에 따른 것임¹²³⁾

121) 상하이시 공공신용정보서비스 플랫폼(2014년 4월 30일 출범)을 기반으로 자유무역구 내 신용정보, 신용파생상품 사용 등과 관련된 보조플랫폼이 설립됨

122) Regulations of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Article 40

123)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주년 평가』, 2014. 11. 5, p.11

4.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제도

가. 개요

- 물류중심형 자유무역지역이란 항만과 공항 및 인근에 위치하도록 하여, 입지적 장점을 극대화하여 국제 물류의 활성화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기존의 자유항과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이 물류중심형에 분류되며, 중계무역과 재수출 등을 주력으로 성장시키고 있음
- 1965년 독립 전에는 싱가포르 전체가 자유항이었으나 1969년에 중계무역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자유무역지역을 만들었음¹²⁴⁾
 -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고용증진, 생산활동 촉진, 외국 물품의 환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 현재는 항만은 8개, 공항에 1개로 총 9개 지역에 자유무역지역을 설치하여 운영중임
 - 항만 자유무역지역은 케펠(Keppel FTZ),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FTZ), 쎬바왕(Sembawang FTZ), 주룽(Jurong FTZ) 등이며 공항 자유무역지역은 창이공항(Changi Airport)에 위치함
- 2017년 Asian Freight, Logistics and Supply Chain (AFLAS) Awards에서 싱가포르의 아시아의 최고 항구, 최고 공항(Singapore Changi Airport), 최고 컨테이너 터미널(PSA)로 뽑힘¹²⁵⁾

124)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125) <http://www.asiacargonews.com/en/news/detail?id=1871>(검색일자: 2017.7.20)

- 아시아와 동남아에 진출하려는 외국기업들의 관문 역할을 하며 세계 물류 중심이 되도록 국제 기준에 맞춘 인프라를 확충함
- 싱가포르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1969년 자유무역지역법(Free Trade Zones Act)을 제정하고 공항·항만지역을 중심으로 자유무역지역(Free Trade Zone)을 도입함
 - 자유무역지역법은 관세법(Customs Act)의 특별법 형태로서 24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규정(Free Trade Zones Regulations)에는 자유무역지역에 관한 사항이 있음

1) 운영현황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은 재무부장관이 지정하고 있으며, 자유무역지역법에 관련된 규정을 만들고, 관리운영기관을 선정함¹²⁶⁾
 - 정부 또는 민간기관이 관리운영이 가능함
- 싱가포르항만공사(Port of Singapore Authority 이하 PSA)는 관리운영기관으로 가장 많은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고 있음¹²⁷⁾
 - 탄중 파가(Tanjong Pagar Terminal), 케펠(Keppel Terminal) 브라니(Brani Terminal), 케펠(Keppel District Park), 썬바왕(Sembawang Wharves), 케펠 디스트리파크(the Keppel Distripark Linkbridge), 파시르 판장(Pasir Panjang Wharves) 등 항만 자유무역지역 관리 운영함¹²⁸⁾
 - 케펠 디스트리파크는 다양한 창고업종과 사무실 시설이 있는 현대적 복합물류센터임 - 브라니, 케펠, 탄중파가로 5분 내로 연결이 가능하며 고속도로와 주요 도로와의 접근성이 좋음

126)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127) 싱가포르항만공사, <https://www.singaporepsa.com> (검색일자: 2017.7.2)

128) 싱가포르항만공사, <https://www.singaporepsa.com> (검색일자: 2017.7.2)

- 도시, 공항, 주요 산업단지와의 접근성이 뛰어나
- 높은 보안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CCTV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24시간 보안요원이 있음

□ 싱가포르항만공사(PSA)는 1996년 정부의 민영화 방침에 의해서 민영화된 기업이며 국영기업인 Temasek Holdings가 모든 지분을 가지고 있음¹²⁹⁾

- 싱가포르의 중요 컨테이너 터미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60개의 정박지를 운영하며 파시르 판장이 가장 발전된 곳임
- 싱가포르항만공사는 화물처리에 집중할 수 있도록 시장의 변화에 대처하기 위하여 해사항만공사에 규제와 항행 관리업무를 이관하였음

□ 주룽항만공사는(Jurong Port Pte Ltd) 풀라우 다마 라우트(Pulau Damar Laut)와 주룽 항만(Jurong Port)을 관리 운영함¹³⁰⁾

- 싱가포르의 벌크화물, 재래선 화물 등을 관리·운영함
- 주룽항만공사는 주룽도시공사(Jurong Town Cooperation)의 자회사로 상공부의 산하기관임
- 주룽도시공사는 정부의 산업육성 정책에 따라 산업단지를 개발하고 운영하는 기업임

□ 싱가포르항공청(Civil Aviation Authority of Singapore)은 창이공항 화물터미널(the Changi Airport Cargo Terminal Complex), 공항 물류센터(the Airport Logistics Park of Singapore)를 운영·관리함¹³¹⁾

- 교통부 산하기관으로 관리·운영을 하고 있음

□ 관리운영 기관은 운영에 관련된 모든 시설을 제공하며 관리함¹³²⁾

129) 싱가포르항만공사, <https://www.singaporepsa.com> (검색일자: 2017.7.2)

130) Free Trade Zones Act (CHAPTER 114, Section 3(2))

131) 싱가포르항공청, <http://www.caas.gov.sg/> (검색일자: 2017.7.3)

- 구분을 위한 울타리 설치를 비롯하여 허가 업무, 보관창고, 검사를 위한 시설 등을 제공하며 반출입 규정에 관련한 기록 등의 역할을 하고 있음
-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에서는 소각, 보관, 판매, 전시, 재포장, 조립, 분리, 분류, 반출, 컨테이너 재적입 등의 물류와 관련된 일을 주로 함
 - 제조활동은 관리운영기관, 세관당국의 허가 사항임
- 법에 금지된 품목(담배류, 주류) 등을 제외하고는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될 수 있음
 -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물품은 반입, 반출이 금지될 수 있음
 - 컨테이너, 일반화물은 72시간 동안 장치를 보관할 수 있으며 환적이나 재수출 화물의 경우 14일 동안 보관이 가능함
- 3천여 개의 물류기업이 입주되어 있고 글로벌 TOP 100의 기업 중 21개 기업의 동북아 지역본부가 있음¹³³⁾
 - 190개의 외국기업이 동남아 영업을 위한 기지로 활용하고 있으며, 710개의 국내외 금융기관이 있으며 외국인 투자가 국내총투자의 70%의 이상을 차지함

나. 관련 법

- 자유무역지역법은 (FREE TRADE ZONES ACT) 1969년에 제정되어 24개 장으로 나누어지며 자유무역지역규정(FREE TRADE ZONES REGULATIONS)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¹³⁴⁾
 - Free Trade Zones Act
 - Free Trade Zones Regulations

132)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133)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싱가포르 국가정보 2017

134) Free Trade Zones Act (CHAPTER 114)

- Free Trade Zones (Appointment of Authorities to Administer Free Trade Zones) Notification
- Free Trade Zones (Declared Areas) Notification
- Free Trade Zones (Manufacture) Regulations

다. 입주자격 및 혜택

1) 입주자격

- 자유무역지역에 회사 등록을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함
 - 법인서류
 - 등록된 회사 이름
 - 대표 여권이나 ID
 - 회사를 운영하기 위한 최소한의 자금
 - 보관 창고를 빌리기 위한 예치금 10만SGD
 - 사무실만 자유무역지역에 위치한다면 5만SGD의 예치금이 필요
 - 자유무역지역에 회사를 시작하는 첫해에 필요한 모든 자금을 법인 계좌에 예치해야 함

-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은 물류중심형이기 때문에 입주업체는 주로 무역업자, 화주, 운송인, 포워드 등 물류기업임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 시설 비용은 도시 국가의 한계점으로 인해 높은 편임

2) 혜택

- 자유무역지역은 컨테이너화물, 비컨테이너 화물(conventional cargo)의 수입, 수출 물품을 위해 72시간의 무료 보관을 제공하며 환적과 재수출을 위해 14일 동안 보관이 가능함

- 싱가포르는 1994년 직접세에서 간접세로 바꾸면서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 부가가치세 (Goods and Service Tax)를 부과하기 시작함¹³⁵⁾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영역으로 반출 시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서는 CIF 가격의 7%에 해당하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고, 특히 4개(중독성 주류, 담배제품, 차량, 석유) 물품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가 책정됨
 - 부가가치세는 싱가포르에 소비되는 제품과 부가가치세가 등록된 사업을 하는 모든 서비스에 부과됨

- 공급물품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재수출이나 환적에 사용 또는 소모되는 경우에는 부가세를 면제해주는 혜택이 있음¹³⁶⁾
 - 환적이 되기까지 자유무역지역 내의 물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유보되고, 수출상품에 대해서는 부가세가 부과되지 않음

- 자유무역지역에 반입되는 환적용 화물은 세관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됨
 - 싱가포르의 모든 물품의 수출입, 반출입에 대한 신고는 무역정보망(TradeNet)을 통해 해야 하며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음
 - 해외에서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입된 화물이 다른 자유무역지역으로 나간다면 무역정보망(TradeNet)에서 환적 허가를 받아야 함

- 외국인투자기업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라 투자규모나 업종 등에 판단하여 조세를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음¹³⁷⁾
 - 선도기업(5~10년간), 사후선도기업(5년간)은 법인세를 면제해줌
 - 싱가포르에 처음 투자하는 기업은 법인세를 50% 면제함

135) GST Guide for Free Trade Zones, Warehouses and Excise Factorie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13

136)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137)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싱가포르 2017

라. 규제 및 사후관리

- 자유무역지역 내에는 세관의 허가 없이는 일반인이 출입할 수도 없고 거주할 수 없음
 - 출입 관리가 철저하며 입구마다 세관의 통제실이 있어 사람과 차량을 통제함
 - 울타리로 이루어져 관세영역과 엄격히 분리되고 모든 물품은 자유무역지역을 통해서 들어와야 하는 것인 원칙임
 - 게이트 관리가 철저하며, 사람 및 차량통제가 엄격하고 게이트마다 세관의 체크포인트가 존재¹³⁸⁾

- 싱가포르 세관은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관리운영을 총체적으로 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내의 물품에 대한 반출입을 관리하고 있으며, 역내 물품의 사용, 제조, 거래 등에 관한 허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내의 물품에 대한 관세와 과세가격을 결정하며, 자유무역지역에 직원을 배치하여 총체적으로 관리함¹³⁹⁾
 - 법에 위배되는 행동하거나 시도하는 자는 \$5,000이하의 벌금형에 처하게 됨¹⁴⁰⁾

- 운영상황, 지출, 수입, 영수증, 장관이 요구 하는 기타 정보 등을 연차 및 회계보고서를 통해 재무부장관에게 매년 보고해야 함¹⁴¹⁾
 - 장관이 정한 규정에 맞는 양식에 기입을 해야 함
 - 회계 장부와 연차보고서는 의회에 제출하게 됨

- 소매업은 원칙적으로 자유무역지역내에서 금지됨¹⁴²⁾

138) 김석태·김태인,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학회, 2006.8
 139) 함길선·신용준,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해양발전연구』 제25권, 2016, pp.163~191
 140) Free Trade Zones Act (CHAPTER 114) Part VI OFFENCES AND PENALTIES
 141) Free Trade Zones Act(CHAPTER 114) 제14장
 142) Free Trade Zones Act(CHAPTER 114) 제8장

- 허가기관에서 서면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가 주어진 경우에만 가능함

- 자유무역지역에서 관세 영역으로 반출된 폐기물이나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상태, 수량, 무게에 따라 관세가 부여됨¹⁴³⁾

¹⁴³⁾ Free Trade Zones Act(CHAPTER 114) 제6장

IV. 국제비교

1. 목적

- 우리나라 자유무역지역의 목적은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통한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및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하는 것임
- 미국 자유무역지역은 대외무역의 촉진, 고용창출, 미국 내 기업 활동 유지 및 지역경제 개발 촉진, 자국 기업 해외진출을 억제하여 국내경제를 활성화하는 것이 목적임¹⁴⁴⁾
- 대만의 수출가공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와 유사하며, 국제무역의 확대, 산업투자의 유치, 최신 기술의 도입, 일자리 증가에 목적을 두고 있음
- 중국 상하이자유무역구의 목적은 투자 자유화, 무역 편리화, 금융 국제화, 행정 간소화 등이며 경제성장 등의 양적 확대보다는 경제구조 개선을 핵심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을 통해 고용증진, 생산활동 촉진, 외국 물품의 환적을 용이하게 하고자 함

144)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2. 관계 법령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제도는 「관세법」과는 별도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며, 해당 법률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 등의 다른 법률의 적용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물품의 반출입 관리 및 관세 등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관세청의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를 통해 고시함
- 미국의 「자유무역지역법」은 관세법의 하나로 자유무역지역법이 「관세법」의 일부분이며 관세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세관이 자유무역지역을 법을 집행함
- 대만과 중국은 특별법의 형태로 법률을 제정하여 자유무역지역제도를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는 달리 관세법 등의 다른 법률의 적용을 배제하지 않음
 -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가공수출구 설치관리조례(加工出口區 設置管理條例)」를 근거로 하며, 해당 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내용이 있는 경우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다른 법률을 준용할 수 있음
 -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중국(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国[上海]自由贸易试验区总体方案)」을 근거로 하며, 중국 해관법을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음
-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법은 특별법의 하나로 24개 장으로 나누어지며 자유무역지역규정(FREE TRADE ZONES REGULATIONS)은 7개 장으로 구성되어 있음

3. 관리체계

-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의 지정권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며, 관리권자는 산업단지형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공항형은 국토교통부장관, 항만형은 해양수산부장관으로

모두 상이함

- 따라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우며, 최근 현황정보의 구축이 미흡함
- 미국은 상무부장관이 상무성 소속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설립과 운영을 맡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세관, 항만청장이 미국의 자유무역지역을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화물통제를 제외하면 항만청장이 관리임무를 맡고 있음
 - 다른 나라와는 달리 특징적으로 각 자유무역지역마다 운영인이라는 제도를 두어 물품 반입부터 반출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게 하는 간접적인 관리방식을 취하고 있음
- 대만의 경우 대만 경제부에서 지정하며 관리주체로 수출가공구관리국이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2단계로 관리되고 있는바, 국가 기관에서 운영뿐만 아니라 모든 관리를 한다는 특징이 있음
- 중국의 경우 중국의 중앙행정기관인 국무원에서 지정하며 관리주체로 상하이자유무역구관리위원회라는 전담부서를 두고 통합, 관리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을 재무부장관이 지정하고, 법을 시행하기 위한 제반규정을 만들고, 관리운영기관을 지정하고 있음¹⁴⁵⁾
 - 싱가포르는 싱가포르항만공사, 주룽항만공사, 싱가포르항공청이 자유무역지역 관리를 맡고 있으며 싱가포르항만공사가 대부분의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하고 있음

145)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4. 지원혜택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은 관세유보,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의 각종 조세우대, 임대료 감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행정서비스 제공 등의 혜택이 있음
- 미국은 자유무역지역에 물품이 반입되면 관세와 증가세가 유예되며 장치기간이 무제한이므로 통관시점을 조정하여 물류기지로 활용 가능한 이점이 있음
 - 국내로 반출되는 물품에 한해 자유무역지역 내에서 발생한 부가가치는 과세하지 않는 혜택을 줌
 - 역내에서 생산된 원료관세가 완성품보다 낮을 경우 완제품이 아닌 부품세율을 적용함
- 대만의 수출가공구는 관세, 화물세, 부가가치세 등의 각종 조세우대, 임대료 감면, 행정 절차 편의 제공 등의 혜택이 있음
- 중국의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세수 혜택보다는 제도 개선을 핵심 방향으로 설정함에 따라 주요 혜택은 선진입 후통관,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제, 스마트 통관검사 관리, 윈스톱 신고제도, 기업등록절차 간소화 등임
- 싱가포르의 역내에서 환적과 재수출에 사용되거나 소모가 된다면 부가세를 내지 않아도 됨¹⁴⁶⁾
 - 자유무역지역은 수입, 수출물품을 위해 72시간까지 보관이 무료이며 환적과 재수출을 위해서는 14일동안 보관이 가능함

146)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5. 사후관리

-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제도에서는 각종 규제와 합동조사 등의 사후관리제도를 두고 있으나, 실제 허가 당시 심의 이외에는 별다른 규제 없이 자유무역지역이 운영되고 있음
 - 또한 현행 「자유무역지역법상」에서는 출입통제 규정을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사람 및 차량이 자유롭게 출입함에 따라 유명무실한 상황임

- 미국은 사후심사는 운영자의 재무장부를 회계조사를 하며 빈도는 기밀임¹⁴⁷⁾
 - 원칙적으로 일정을 미리 알려주지만 불시점검도 가능하며, 물품의 성격에 따라 과거 몇년간의 내역이 조사 대상이 되기도 함
 - 미국은 물품의 재고 조사의 경우 운영인은 1년에 1번 이상 보고서를 세관에 보고해야 하며 등급을 3개로 나누고 고위험군의 경우 1년 동안 3번의 위험관리 평가가 실시됨

- 대만 수출가공구의 사후관리로 입주업체는 매월 영업매출, 고용인원, 토지사용 현황을 보고하며 수출가공구관리국의 불시점검을 통해 현황을 파악함
 - 출입통제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은 수출가공구관리국이 분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비교적 엄격한 편임
 - 입주업체 직원은 출입구에서 출입증을 제시, 모든 차량은 차량의 앞쪽에 차량통행증을 부착해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 경비원은 차량의 출입을 거부할 수 있음

- 중국 상하이자유무역구의 사후관리는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 방식으로 종합 법률 집행, 정보 공유, 기업 연간보고서 및 비정상 경영 리스트 작성 및 공개 등의 사후 관리를 위한 기초제도가 완비되어 있음
 - 출입통제는 서류검사 및 불시 검문이 이루어질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과 차량의 통행이 대부분 자유로운 편임

147)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 싱가포르의 사후관리를 위해 매해마다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상황, 수입 및 지출내역, 영수증, 장관의 요구하는 기타 정보 등을 연차 및 회계보고서를 통해 제출함¹⁴⁸⁾
- 싱가포르는 관세영역 비관세영역이 엄격히 분리가 되어 있으며, 자유무역지역 내에는 출입구마다 통제시설이 있어, 출입구의 관리가 철저한 편이며 세관의 허가가 나온 관계자나 차량만이 들어갈 수 있음

148)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표 IV-1〉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자유무역지역제도 비교

	우리나라	미국	대만	중국	싱가포르
목적	외국인투자의 유치,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지역개발 및 국가경제 발전 등	자국 기업 해외진출을 억제 지역경제개발 촉진 미국 내 기업 활동 유지	국제무역의 확대, 산업투자의 유치, 최신 기술의 도입, 일자리 증가 등 항공수출구 설치관리조례(加工出口區設置管理條例)	투자 자유화, 무역 편리화, 금융 국제화, 행정 간소화	국제물류촉진 고용증진
관계 법령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관세법의 일부로 자유무역지역법	항공수출구 설치관리조례(加工出口區設置管理條例)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총체방안(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總體方案)	관세법의 특별법 자유무역지역법
	지정 관리 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등	상무부 장관 자유무역지역 위원회, 세관, 항만·항장	행정원 (주요 경제부처의 장) 수출가공구관리국	국무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관리 위원회
지원혜택	- 조세우대 - 임대료 감면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 - 행정서비스의 제공	- 관세우예 - 장기기간이 무제한 - 국내 부가가치 과세하지 않음	- 조세우대 - 임대료 감면 - 행정절차 편의 제공, 투자 관련 일체의 사항을 일괄적으로 대리처리	- 선진인 후통관 - 수출입 화물 집중신고제 - 스마트 통관검사 관리 - 원스톱 신고제도 - 기업등록절차 간소화	- 관세우예 - 조세우대 - 부가가치세 면제
사후관리	- 출입통제: 자유무역지역을 출입하는 사람 및 자동차에 대한 기록 관리 - 합동조사: 입주계약, 수출입 현황, 원산지관리 실태 등에 관한 점검 또는 확인	- 매년 의회 평가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재고조사의 경우 위험관리군을 나누어 관리	- 출입통제: 수출가공구관리국이나 본점의 승인을 받아야 함(사람의 경우 출입구에서 출입증 제시, 차량의 경우 차량통행증을 부착) - 매월 영업매출, 고용인원, 토지사용 현황을 보고(수출가공구관리국의 불시 점검을 통해 현황 파악)	- 출입통제: 사람과 차량은 대부분 자유롭게 진출입이 가능하나, 서류검사 및 불시 검문이 이루어짐 -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 감독 방식: 종합 법률 집행, 정보 공유, 기업 연간보고서 및 비정상 경영 리스트 작성 및 공개	- 출입통제: 울타리로 엄격히 분리되어 있으며 허가된 자동차와 사람만 허용 - 매년 회계보고서 제출

출처: 저자 작성

V. 결 론

- 우리나라를 비롯한 앞서 비교한 미국, 중국, 대만, 싱가포르는 자유무역지역 안에서 자유로운 물류·유통 및 무역활동 등을 보장하고 있음
 - 고용 증진, 무역의 진흥, 국제물류의 원활화 및 지역개발 등을 통해 국가 발전의 목적으로 삼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형태, 혜택, 운영 방법은 나라별로 다양하며 미국, 우리나라, 대만, 중국은 생산, 물류를 동시에 추진하며 발전시키려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의 경우 물류중심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의 관리를 하는 주체와 조직이 서로 달라 통합적인 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며 그로 인해 통일된 기준의 정보 구축이 되어 있지 않음
 - 각 자유무역지역 개별적으로 입주기업 관리를 위한 현황 조사를 하고 있으나 일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서 통일적인 데이터 관리를 할 수 없는 상황임
 - 본 보고서에도 국내 자유무역지역의 통일적인 데이터를 만들어 보려 했으나 기준이 모두 달라서 통일적인 지표를 만들기 어려운 한계점이 있었음

- 미국, 중국, 대만은 자유무역지역위원회 같이 자유무역지역을 전체를 관리하는 전담부서가 따로 있어서 일정한 기준 아래 체계적 운영이 가능함
 - 대만은 투자 관련 일체 사항을 일괄적으로 대리처리를 해주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원스톱서비스를 제공하고, 중국은 원스톱 신고제도를 통해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함

- 대만, 중국, 싱가포르의 자유무역지역법이 특별법의 형태이며 미국의 경우 관세법의 일부로 구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법에서 관세법을 배제시키고 있음
 - 우리나라는 「자유무역지역 법률」에는 자유무역지역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관세법을 적용하지 않고 있으며 실제 통관과 관련해서는 「관세법」하의 법령이 주로 사용되고 있지만 명시된 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자유무역지역 내의 운영에 혼동을 주는 경우가 있음

- 하지만 「관세법」의 적용을 배제하는 문제에 대해 실무적인 관점에서 상충되는 의견이 있음
 - 자유무역지역으로 반출되는 화물에 대해서는 「관세법」상 보세구역의 화물관리감독 절차를 통하여 통제할 수 없으므로 사후관리 측면에서의 문제점이 있는바, 「관세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음

- 자유무역지역의 혜택은 조세감면 등이 공통된 혜택이며 각 나라별로 상황에 맞추어 혜택을 주고 있음
 - 미국, 대만, 중국은 혜택이 관세유예, 임대료 감면, 행정서비스 제공을 함
 - 싱가포르의 경우 혜택은 관세와 부가세의 면제로 다른 나라에 비해 적은 편으로 물류 중심형 위주의 자유무역지역정책을 펼치고 있으며 국토 면적의 한계로 인해 장치 기간의 제한이 있음

-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에 비해 비교적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며 특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이 지원이 됨

- 자유무역지역은 임대료 감면, 조세 감면 등 다양한 혜택을 기업에 주는 제도이기 때문에 사후관리 또한 중요한 문제임
 - 미국의 경우 정기적인 보고를 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위험관리군을 설정하여 맞춤형 관리를 하고 있음

- 싱가포르의 경우도 정기적으로 사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함
 - 중국은 사중사후(事中事後) 관리감독 방식을 통하여 기업 연간보고서, 비정상 경영 리스크 작성을 함
 - 대만은 매월 영업매출 등을 보고하며 관리국의 불시 점검을 받고 있음
- 자유무역지역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본연의 목적인 수출증대,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국가가 기업에 다양한 혜택을 주는 제도이므로 제도의 타당성을 위해서는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있어야 하며 올바른 관리를 위해서도 힘써야 함
- 우리나라도 자유무역지역관리원, 지자체 등의 관리기관이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만들어 하나의 통일된 기준을 세워 효과적으로 자유무역지역을 관리해야 함
- 명확한 기능과 권한을 설정하여 업무 처리에서 빛는 혼란을 방지해야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해짐
 - 각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인 지역선정·해제나 관리를 위해 통일된 평가지표를 만들어서 국내의 입주기업의 수출기여, 고용창출 등의 비교를 통한 평가가 필요함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목적 아래 현실성이 없는 지역지정을 하며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자유무역지역에 대한 무용론이 대두되는 상황에서 본 보고서의 자유무역지역 관련 비교 연구는 향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지역이 개선을 위한 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참고문헌

- 관세청, 『자유무역지역 화물관리』
기획재정부, 『경제특구 활성화 지원 사업군 심층평가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 2014.
12. 19
- 김석태·김태인, 「인천국제공항 자유무역지역(FTZ)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상품학회,
2006.8
- 김은우,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구의 출범이 우리나라 해운·항만·물류 분야에 주는
시사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3. 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의 주요내용 및 전망』, 한중경제포럼, 2013.
11. 11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1주년 평가』, 2014. 11. 5
- 박재곤,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 및 효율적 관리체계 구축방안」, 산업연구원, 2007
- 백종실, 「미국 자유무역지역의 운영실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03년 4월호, 2003.
4, p.64~74
- 송주미, 『자유무역지역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세행정 전략연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5
- 이성우·송주미·한덕훈, 『외국인 투자요인 변화에 따른 자유무역지역 기능 재정립
방안』,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4. 12
- 양금승, 『한국 경제특구의 성관분석 및 투자활성화 과제』, 한국경제연구원, 2015. 12
-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제도 현황 및 개선방향 연구』,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2. 12
- 장근호, 「자유무역지역 운영 성과와 구조적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관세학회지』 제15권
제4호, 한국관세학회, 2014. 12
- 함길선·신용준, 「자유무역지역의 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세계해양발전
연구』 제25권, 2016, pp.163~191

- Kotra, 「중국 자유무역시범구 운영현황 및 시사점」, 2016. 11
- 대만수출가공구관리국, *An Investment Guide to Export Processing Zones in Taiwan*
- 대만 수출가공구관리국, *Business Classifications Allowed to be Established in the Export Processing Zone(2017/05/24)*
- 대만 경제부 투자업무처, www.dois.moea.gov.tw
- 대만 경제부 수출가공구관리국, <http://www.epza.gov.tw/>
- 대만 경제부 투자 포털, <http://investtaiwan.nat.gov.tw>
- 미국 관세법, <https://www.law.cornell.edu/>
-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Notice of the China (Shanghai) Pilot Free Trade Zone on the Administration of Filing of Overseas Investment*
- 산업통상자원부, <http://www.motie.go.kr>
- 싱가포르 관세청, <https://www.customs.gov.sg/>
- 싱가포르 항공청, <http://www.caas.gov.sg/>
- 싱가포르 항만공사, <https://www.singaporepsa.com/>
- 싱가포르 관세법 Free Trade Zones Act, <http://statutes.agc.gov.sg/>, (검색일자: 2017.7.1)
- 주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관, <http://chn-shanghai.mofa.go.kr>
- 주상하이 총영사관, 『중국(上海) 자유무역시범구』, 2017. 5. 16
- 중국 국무원, <http://www.gov.cn/>
-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http://en.china-shftz.gov.cn>
- Asiacargonews, <http://www.asiacargonews.com/en/news/detail?id=1871>(검색일자: 2017.7.20)
- GST Guide for Free Trade Zones, Warehouses and Excise Factories, Inland Revenue Authority of Singapore, 2013
-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357>
-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5/global>

BbsDataView.do?setIdx=244&dataIdx=153446

Kotra 해외시장 뉴스, <https://news.kotra.or.kr/user/globalBbs/kotranews/6/globalBbsDataView.do?setIdx=322&dataIdx=159412>

Kotra 해외비즈니스정보포털 글로벌윈도우 국가정보, <https://news.kotra.or.kr/user/nationInfo/kotranews/14/userNationBasicView.do?nationIdx=60>

U.S. Foreign-Trade Zones Board, <http://enforcement.trade.gov/>

U.S. Foreign-Trade Zones Board, US Foreign Trade Zone Board, Annual Report(2015)

부 록

1. 대만 수출가공구 기관 정보

구분	기관 연락처
타이페이항	전화: 886-2-2619-6025 팩스: 886-2-2619-6026 메일: dttdw03@klhb.gov.tw
타이중항	전화: 886-4-2664-2254/2354 팩스: 886-2658-0547
안핑항	전화: 886-7-562-2207/2681 팩스: 886-7-521-4903 메일: p06092@mail.khb.gov.tw
까오슝항	전화: 886-7-562-2207/2681 팩스: 886-7-521-4903 메일: p06092@mail.khb.gov.tw
지룽항	전화: 886-2-2420-6283~5 팩스: 886-2-2429-5826 메일: kel_ftz@klhb.gov.tw
쑤아오항	전화: 886-3-995-2739 팩스: 886-3-997-2004 메일: dttdq14@klhb.gov.tw
타오위웬공항	전화: 886-3-383-3456 팩스: 886-3-393-3456 메일: ftz.marketing@ftz.com.tw

2. 중국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 기관 정보

구분	기관 연락처
중국(상하이)자유무역구 관리위원회	전화: 5869-8500 팩스: 5869-5800 주소: 9 Jilong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31
와이가오차오보세구	전화: 5869-8500 팩스: 5869-5800 주소: 9 Jilong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0131
양산종합보세구	전화: 6828-1888 주소: Tower A, Deep-water Port Plaza, 9 Shuntong Road, Pudong, Shanghai 201308
푸동공항종합보세구	전화: 2028-5883 팩스: 2028-5800 주소: 1333 Wenju Road, Pudong New Area, Shanghai 201202

3.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구 전면적 개혁개방 심화 방안(2017.3)

개혁조치	주요내용
투명하고 개방적인 시장진입 관리 모델 구축	시장 진입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와 외상투자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실행
상업 등록제도 개혁 및 심화	기업의 등록 자주권 보장과 기업 경영자율권 존중
'증명서 분리' 실현	'선실행 후증명' 개혁 심화
높은 수준의 국가무역 '단일 창구' 관리제도 수립	유엔 국제무역 '단일 창구' 기준 참고하여 통계 협력과 편리화, 표준화 실현
'안전, 효율, 편리'가 보장된 관세청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중국 전역의 통관 일체화와 '두 가지 임의추출, 한 가지 공개'(雙隨機, 一公開)관리 '인터넷+통관' 등 제도 실행

개혁조치	주요내용
검사·검역 위협분류 종합평가체제 구축	수입 상품 리스크 조기 경보 신속 반응 시스템 개선, 수입 불가 리스크 모니터링 강화, 소비재 등 상품 리콜제도 실행
국제 경쟁력을 갖춘 혁신 산업 관리 시스템 구축	국제적으로 공동 개발한 바이오 의약품의 진입 허가 최적화
혁신 요소의 시장 배치 메커니즘 최적화	의약품 상장 허가 소지인 제도 개선
지식재산권보호 및 운용체계 개선	특허, 상표, 판권 등 지식재산권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해 지식재산권의 혁신과 운용, 보호, 관리, 서비스를 연계해 지식재산권의 질적 수준을 제고함
투자제도 완화	자유무역 시험구의 외상투자의 네거티브 리스트 관리제도 최소화, 금융 서비스 추진, 전신, 인터넷, 문화, 문물, 수리, 항공 서비스 등 전문분야의 서비스업과 선진 제조업 영역의 대외개방 최적화
무역 편리화의 신규직 실행	항구 통관 절차 최적화, 매 단계의 관리방식 개혁 추진, 화물의 평균 통과 시간 공개
크로스보더 서비스 무역 관리 모델 혁신	리스크가 통제가능하다는 전제하에 금융보험, 문화관광, 교육보육 등 하이엔드 서비스 영역의 무역편리화 추진 가속화
금융개방 혁신 심화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와 연동 강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금융개방 혁신 시험지역의 상하이 국제금융센터 건설 가속화 방안' 적극 실행
자유무역 항구 건설	양산 보세항구(洋山保稅港區)와 상하이 푸둥공항종합보세구(上海浦東機場綜合保稅區) 등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 내에 자유무역 항구 건설
행정간소화/분권(簡政放權) 등 행정관리 체제 강화	행정간소화/분권 추진 가속화, 행정심사비준제도 개혁 심화
도중/사후 관리감독시스템 강화	시장 관리감독과 도시관리범위의 종합적 법집행 개선

개혁조치	주요내용
정보 공유서비스를 제공하는 정부서비스 시스템 최적화	기업의 수요와 빅데이터 분석에 따라 '인터넷+정부 서비스' 시스템 구축
편리함과 높은 수준의 서비스로 통상 협력 촉진	아태지역 모델 E-port 네트워크(APMEN)와 연계해 상하이 국제무역 '단일 창구'와 '일대일로' 연선 항구의 정보교류 및 서비스 공유 시스템 구축
'일대일로' 금융 서비스 강화	금융시장에서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와 '일대일로' 연선국가 간 상호 협력과 연계 촉진
국제경쟁력을 갖춘 세제 구축	서비스무역 혁신 시범지역 외의 세수 정책 연구
체계적인 개혁 모델 구축 가속화	시범지역의 개혁 경험 정리와 시스템 통합 가속화

4. 상하이 자유무역시험구, 24가지 혁신중점사업 설정(2017.3)

순번	24개 중점 사업
1	내·외자 기업이 함께하는 시장제도의 형성
2	상업등록 제도의 개혁 심화
3	'증명서 분리' 개혁 시행의 전면적 추진
4	높은 수준의 국가무역 '단일창구' 관리제도 수립
5	관세청 종합 관리 개혁 실시
6	검사·검역 위험분류 종합평가체제
7	과학기술 혁신센터와 연동 강화
8	인재 서비스 체계의 최적화
9	지식재산권 보호 및 운용체계 수립
10	상하이 자유무역 홍콩특별행정지구 건설방안 수립
11	대외개방의 영역 확대
12	크로스보더 무역서비스 혁신의 발전 추진
13	항구 통관절차 효율성 증대
14	상하이 국제금융센터와 연동 심화
15	자유 무역 계정 서비스 기능 보완
16	금융 종합 감독 강화
17	정부통치능력 선형지구 방안 수립
18	행정기구 간소화 및 권력 분산
19	도중 및 사후 관리감독 강화
20	종합법의 집행 개혁 추진
21	서비스형 정부건설 가속화
22	혁신 서비스 일대일로 건설의 발판의 체계적 추진
23	시장의 서비스 체계 강화
24	국제화 금융서비스 혁신 추진

5. 싱가포르 자유무역지역법

FREE TRADE ZONES ACT

(CHAPTER 114)

(Original Enactment: Act 30 of 1966)

REVISED EDITION 1985

(30th March 1987)

An Act to provide for the establishment of free trade zones in Singapore and for matters incidental thereto.

[1st September 1969]

PART I

PRELIMINARY

Short title

1. This Act may be cited as the Free Trade Zones Act.

Interpretation

2. In this Act, unless the context otherwise requires —

“authority” means any statutory body or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or company which has been appointed under section 3(2) to administer, maintain and operate any free trade zone which has been so declared under section 3(1);

“Committee” means the Free Trade Zone Advisory Committee appointed under section 4;

“Director-General” means the Director-General of Customs appointed under section 4(1) of the Customs Act (Cap. 70);

“customs duty” means any customs duty or excise tax imposed under the Customs Act;

“customs territory” means Singapore and the territorial waters thereof but excluding any free trade zone;

“dutiabale goods” means any goods subject to the payment of customs duty on entry into customs territory or manufactured in Singapore including any free trade zone and on which customs duty has not been paid and includes goods manufactured in a free trade zone from materials of a class dutiable on entry into customs territory for consumption within the customs territory;

“free trade zone” means any area declared to be a free trade zone under section 3(1);

“goods” includes animals, birds, fish, plants and all kinds of movable property;

“manufacture”, with its grammatical variations and cognate expressions, means the process of converting materials into a new product or article, whether or not by power-operated machinery, whereby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has been effected:

Provided that the Director-General may, in his discretion, determine that the result of any manufacture is not a new product or article and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has not been effected;

“officer of customs”, “proper officer of customs” and “senior officer of customs” have the same meanings as in the Customs Act (Cap. 70).

[3

Declaration of free trade zones and appointment of authority

3.

—(1)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declare any area in Singapore to be a free trade zone and every such notification shall define the limits of that free trade zone.

(2) The Minister may appoint any statutory body or department of the Government or company as the authority to administer, maintain and operate

any free trade zone which has been so declared under subsection (1).

[4

Appointment of Free Trade Zone Advisory Committee

4. The Minister may,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appoint a Free Trade Zone Advisory Committee to advise him on all matters connected with free trade zones.

[5

PART II

OPERATIONS PERMITTED WITHIN A FREE TRADE ZONE

Dealing with or disposal of goods in a free trade zone

5.

—(1) Goods of any description, except such as are specifically and absolutely prohibited by any written law, may be brought into a free trade zone.

(2) Goods in a free trade zone may —

(a)

be removed from the free trade zone, destroyed, or sent into customs territory or into another free trade zone in the original package or otherwise; and

(b)

unless otherwise directed by the authority, be stored, sold, exhibited, broken up, repacked, assembled, distributed, sorted, graded, cleaned, mixed, or otherwise manipulated, or be manufactu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Provided that when any goods of a class dutiable on entry into customs territory whether in their original condition or after manufacture or as part or ingredient of any goods manufactured in a free trade zone are sent from a free trade zone into the customs territory, the goods shall be subject to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Cap. 70) and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3) Goods, except such as are prescribed under subsection (4), which have been brought into a free trade zone from customs territory shall be deemed to be exported for the purpose of drawback under the provisions of the Customs Act.

(4) Subsection (2)(b) shall not apply to such goods as may be prescribed from time to time by the Minister by notification in the *Gazette*, save that such prescribed goods may be stored in a free trade zone for the purpose of transshipment or survey and repacking before removal into customs territory: Provided that such survey and repacking shall not be carried out except with the prior permission of a senior officer of customs and shall be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he may think fit to impose.

[6

Manipulation or manufacture in a free trade zone

6.

—(1) Any person who intends to assemble, mix or otherwise manipulate any goods or to carry out such manufacture as is permitted under section 10(1) for entry into customs territory, where either the manufactured goods or the materials used in the manufacture thereof are dutiable, shall give the Director-General notice in writing of his intention and obtain his prior written permission to do so. Such permission shall be granted or withheld as the Director-General in his discretion shall think fit:

Provided that, if permission is granted, such manipulation or manufacture shall be carried out under customs supervision.

(2) Any manipulation or manufacture permitted under this section shall be subject to the regulations made under this Act and to such conditions as the Director-General may think fit to impose:

Provided that the Director-General may, in his discretion, give an allowance

for recoverable and irrecoverable waste, but if recoverable waste is sent into customs territory, it shall be dutiable in its condition and quantity and at its weight at the time of entry.

[7

Calculation of duty

7.

—(1) The rate of customs duty and the valuation, if any, applicable to any goods subject to customs duty shall be —

(a)

in the case of goods lawfully brought into or manufactured in a free trade zone —

(i)

if there has been no manipulation or manufacture effecting a change in tariff classification, the rate and valuation in force on the day on which the goods are sent into customs territory;

(ii)

if the goods are used in the manufacture of any product which is not of a class dutiable on entry into customs territory, the rate and valuation in force on the day on which the goods are removed for manufacture; and

(iii)

if the goods are manufactured from materials which are not subject to customs duty, the rate and valuation in force on the day on which the entry of the manufactured goods into customs territory is authorised by the proper officer of customs; and

(b)

in the case of uncustomed goods, the rate and valuation in force on the day on which the goods became uncustomed goods, if known, or the rate and

valuation in force on the day of seizure, whichever is the higher.

(2) The rate of exchange to be used for determining the equivalent in Singapore currency of any foreign currency shall be the current selling rate in Singapore as last notified before the time the goods are removed for the purpose of manufacture or entry into customs territory.

[8

(3) The valuation applicable to any goods subject to customs duty shall be ascertained in accordance with the Customs Act (Cap. 70).

Retail trade

8. No retail trade shall be conducted within a free trade zone unless authorised in writing by the authority and subject to such conditions as the authority may impose.

[9

Written permission required for use or consumption of dutiable goods

9.

—(1) Subject to sections 5, 6, 8 and 10, no dutiable goods shall, without the written permission of a senior officer of customs not below the rank of Assistant Director-General of Customs, be used or consumed in a free trade zone.

(2) Any person who contravenes subsection (1) shall be punished —

(a)

on the first conviction with a fine of not less than 10 times the amount of the customs duty or tax or \$5,000 whichever is the lesser amount, and of not more than 20 times the amount of the customs duty or tax or \$5,000 whichever is the greater amount:

Provided that when the amount of customs duty or tax cannot be ascertained, the penalty may amount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and

(b)

on the second or subsequent conviction with such fine as prescribed in paragraph (a) and with imprisonment for a term not exceeding 2 years.

[10

Manufacture

10.

—(1) No manufacture shall be carried out in a free trade zone without the approval of the Minister. Such approval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2)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governing manufacture within a free trade zone.

[11

PART III

RESPONSIBILITIES AND FUNCTIONS OF AUTHORITY

Authority to provide facilities

11.

—(1) The Minister shall require the authority to provide and maintain in the free trade zone such facilities as he may consider necessary for the proper and efficient functioning of the free trade zone.

(2) The Minister shall give to the authority such directions as are necessary to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and for the purpose of protecting the revenue, and the authority shall comply with those directions.

(3) The authority shall permit customs offices to be established in a free trade zone and shall provide adequate facilities for officers of customs whose duties require their presence within or at the perimeter of the zone.

(4) The authority shall provide adequate enclosures to segregate the free trade zone from customs territory for the protection of the revenue, together with suitable provisions for the movements of persons, conveyances, vessels and

goods into and from the free trade zone.

[12

Authority may permit erection of private buildings, etc.

12.

—(1) The authority may permit any person to erect such buildings and other structures within the free trade zone as may be required:

Provided that such permission shall not constitute a vested right as against the authority or the Government.

(2) Such permission shall not be granted on terms that conflict with the proper use of the free trade zone.

(3) The authority may, after consultation with the Director-General for the protection of the revenue, lease to or allow any person to take, hold or enjoy movable and immovable property of every description in a free trade zone upon such terms and conditions and for such period as the authority may determine.

[13

Exclusion of certain goods or discontinuance of operations

13.

—(1) The authority may at any time in its discretion order the exclusion or removal from the free trade zone of any goods, or the discontinuance of any operations, which in its opinion are dangerous or prejudicial to the public interest, health or safety.

(2) Any person aggrieved by such an order may appeal to the Minister within 14 days of the service of the order, and the decision of the Minister shall be final and shall not be questioned in any court.

(3) An order by the authority as to the exclusion or removal of any goods which in its opinion are dangerous or prejudicial to the public interest, health

or safety shall, notwithstanding an appeal to the Minister, be complied with immediately, but an order as to the discontinuance of operations shall not take effect, if an appeal has been made to the Minister, until the determination of the appeal in favour of the authority.

[14

Annual reports and accounts

14.

—(1) The authority shall present to the Minister annually and at such other times as the Minister may prescribe reports containing a full and correct statement of all operations, receipts and expenditure and such other information as the Minister may require.

(2) The Minister shall prescribe the form and the manner of keeping the accounts of the free trade zone.

(3) The accounts of the authority, together with its annual report, shall, in accordance with such directions as may be given by the Minister, be presented to Parliament.

[15

PART IV

MISCELLANEOUS PROVISIONS

No person shall enter or reside within zone without permission

15. No person shall enter or reside within a free trade zone without the permission of the authority.

[16

Public servants

16. The members of the authority shall be deemed to be public servants within the meaning of the Penal Code.(Cap.224).

[17

Action of officers no offence

17. Nothing done by an officer of customs or a member or employee of the authority in the course of his duties shall be deemed to be an offence under this Act.

[18

Appeal from decision of authority or the Director-General

18. Where it is provided in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that the decision on any matter rests with the authority or the Director-General then unless it is specifically provided that the decision is at the discretion of the authority or the Director-General, any person aggrieved by the decision may appeal therefrom to the Minister.

[19

PART V

PROVISIONS AS TO TRIALS AND PROCEEDINGS

Who may prosecute

19. Prosecutions in respect of offences committed under —

(a)

section 9 may, with the authoris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be conducted by a senior officer of customs or any officer of customs specially authorised in writing in that behalf by the Director-General; and

(b)

any other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may, with the authorisation of the Public Prosecutor, be conducted by an officer of the authority specially or generally authorised in writing in that behalf by the Minister.

[20

Burden of proof

20. If in any prosecution in respect of any goods seized for non-compliance with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or for any

other cause of forfeiture or for the recovery of any penalty or penalties under this Act, any dispute arises as to whether the goods have been lawfully brought into a free trade zone or lawfully landed, or lawfully manipulated or manufactured in a free trade zone, or whether the goods have been lawfully used or consumed, then and in every such case the burden of proof shall lie on the defendant in such prosecution.

[21

PART VI

OFFENCES AND PENALTIES

Penalty for offences not otherwise provided for

21. Every omission or neglect to comply with, and every act done or attempted to be done contrary to the provisions of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shall be an offence and in respect of any such offence for which no penalty is expressly provided, the offender shall be liable on conviction to a fine not exceeding \$5,000.

[22

Attempts and abetments

22. Whoever attempts to commit any offence punishable under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or abets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shall be punished with the punishment provided for the offence.

[23

Offences by bodies of persons and by servants and agents

23.

—(1) Where an offence under this Act or any regulations made thereunder has been committed by a company, firm, society or other body of persons, any person who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was a director, manager, secretary or other similar officer or a partner of the company, firm,

society or other body of persons or was purporting to act in that capacity shall be deemed to be guilty of that offence, unless he proves that the offence was committed without his consent or connivance and that he exercised all such diligence to prevent the commission of the offence as he ought to have exercised, having regard to the nature of his functions in that capacity and to all the circumstances.

(2) Where any person would be liable under this Act to any punishment, penalty or forfeiture for any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 he shall be liable to the same punishment, penalty or forfeiture for every such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 of any clerk, servant or agent, or of the clerk or servant of the agent provided that the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 was committed by the clerk or servant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or by the agent when acting on behalf of such person or by the clerk or servant of the agent when acting in the course of his employment in such circumstances that had the act, omission, neglect or default been committed by the agent his principal would have been liable under this section.

[24

PART VII

REGULATIONS

Minister to make regulations

24.

—(1) The Minister may make regulations for or in respect of every purpose which is deemed by him necessary for the carrying out of this Act.

(2) All regulations and orders made under this Act shall be published in the Gazette and shall be presented to Parliament as soon as possible after publication.

관세연구 17-03

자유무역지역제도 개선을 위한 연구

발행 2017년 6월 30일

저자 강성훈 · 양지영 · 김미정

발행인 박형수

발행처 한국조세재정연구원

30147 세종특별자치시 시청대로 336

TEL: 044-414-2114(대) www.kipf.re.kr

등록 1993년 7월 15일 제2014-24호

조판 및
인쇄 에스디워크

© 한국조세재정연구원 2017

ISBN 978-89-8191-888-0

* 잘못 만들어진 책은 바꾸어 드립니다.